
입 법 정 보

2018-5호



목 차



1.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5
2.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5
3.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7
4.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8
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8
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9
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9
8.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
9.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
10.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	11
11.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2
12.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4
1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5
14.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
15.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7
1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7
17.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8
18.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8
1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9
20.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9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0
2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1
23. 민법(친족·상속편)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21
24. 민법(채권편)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24
25. 민법(물권편)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26
26. 민법(총칙편)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29
27.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32
29.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방부).....	32
29.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33
30.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34
31.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폐지(안) (법무부).....	34
32. 사법시험법 시행령 폐지(안) (법무부).....	34
3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35
3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35
35.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	36
3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6
37.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계청)	38

38.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38
3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39
4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40
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40
4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41
4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42
45.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	42
4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43
48.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46
49.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46
50. 주민등록표 등·초본 제출요구 감축을 위한 국가배상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47
5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47
52.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49
53.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50
54.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52
55.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	53
56.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4
5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5
58.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55
59.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57
60.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58
6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60
62.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61
63.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63
6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63
65.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65
66.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66
6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67
6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67
69.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68
7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69
71.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	69
72.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70
73.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원회).....	70
7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72
7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73
7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75
77.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청).....	76
78.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77
79.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77
80.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	78
8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80
82.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통상부).....	80
83.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81

8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82
8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82
86.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83
87.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83
88. 원자력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3
8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84
9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85
9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86
9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가보훈처).....	87
93.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88
94.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89
95.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91
96.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92
97.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93
9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94
9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	94
100.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95
101.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95
102.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96
103.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7
104.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7
10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99
106.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99
107.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99
10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00
109.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0
110.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1
111.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2
1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102
113.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
114.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3
11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4
11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5
11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5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106
119.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7
120.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8
121.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8

정부입법 예고

1.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2. 26. ● 마감일자 : 2018. 4. 9.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운영 및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보건법」 이 개정(법률 제14931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규정 마련(안 제21조의2)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설치하려는 경우 일정 공간을 확보하고, 의료인을 고용하는 등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나. 업무 위탁기관 변경(안 제22조)
 - 어린이활동공간·용품,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 관련 업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함

2.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2. 26. ● 마감일자 : 2018. 4. 9.
- 한국환경공단이 하던 석면피해 구제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하는 한편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평가·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석면피해구제법」 이 개정(법률 제15098호, 2017년 11월 28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석면피해 구제업무 이관(안 제4조 등)

- 석면피해 구제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함.

나. 석면폐증 인정 신청자에 대한 폐기능 검사 구비 의무 면제(시행규칙 안 제3조제2항 신설)

- 현행 석면폐증 인정 신청자에게 질병 인정 여부와 관계없는 폐기능 검사 결과를 모두 구비하도록 하여 폐기능이 정상인 자 및 불인정자에게도 불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는 바, 석면폐증 인정 신청 시 폐기능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토록 하여 불필요한 검사를 방지함.

다. 구제급여 환수 주체 변경 등(안 제24조)

- 환경부가 하던 구제급여 환수 업무를 기술원으로 이관하고, 체납 처분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독촉 시 기한까지 미납하는 경우 체납처분이 가능함을 알리도록 절차 신설함.

라.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재지정의 절차·기준 마련(안 제34조, 안 제34조의2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 신설)

-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기준으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 수행능력 등을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센터 지정 여부 및 지정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 센터 지정 심사단의 심사의견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

마.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받은 자에 대한 건강검진 기관 확대 등(안 제36조, 제37조, 제39조 및 제 39조의2)

-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건강검진 기관을 석면환경보건센터(2개소)에서 석면질병진단·검사 의료기관(전국 111개소)로 확대하여 접근성을 제고하고, 이에 따라 센터에서 하던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관리 업무를 기술원으로 이관함.

바. 주민등록 등·초본 정비(안 제3조, 제16조, 제21조 및 제22조)

- 1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등본 대신 초본을 제출 요구하도록 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제출요구 법령 정비 계획’에 따라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초본으로 변경함.

사.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업무 범위 확대(안 제12조의2 신설)

- 석면피해 인정·갱신·취소에 국한된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업무에 위원회가 실제 수행 중인 의학적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추가함.

아.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 개선(안 별지 제2호서식)

- 석면노출원 및 석면 관련 직종의 구체적인 예시를 추가하여 응답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가정에서 석면근로자의 옷을 세탁하거나 석면 관련 제품을 수리하는 등 기존에 누락된 석면 노출 경로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는 등 석면 노출 경로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2. 26.

• 마감일자 : 2018. 4. 9.

- 한국환경공단이 하던 석면피해 구제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하는 한편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평가·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석면피해구제법」이 개정(법률 제15098호, 2017년 11월 28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석면피해 구제업무 이관(안 제5조제1호 등)

- 석면피해 구제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함.

나.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업무 범위 확대(안 제6조의2 신설)

- 석면피해 인정·갱신·취소에 국한된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업무에 위원회가 실제 수행 중인 의학적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추가함.

다. 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의 지급 방법 개선(안 제9조제2항 삭제)

- 제도 시행 초기엔 특별유족이 집중되어 재원 확보에 애로가 있어 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를 3년 분할 지급토록 하였으나, 제도 시행 8년차인 현재 연간 특별유족 수가 50여명으로 일정하고 기금

라. 석면환경보건센터 평가의 사전 통보 절차 및 지정취소·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절차 마련(안 제 44조의2, 제44조의3 및 별표 3 신설)

- 석면환경보건센터 평가 시 3개월 전까지 평가항목 등을 센터에 통보토록 하고, 지정취소·업무정지 시 그 사실을 관보 등에 게재토록 함.

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2. 26.
- 마감일자 : 2018. 3. 23.
- 이동통신사업자가 부당하게 USIM의 유통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법 제9조제5항 신설)하도록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한다)」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신고사항 규정(안 제6조제2항 개정)
 - 단말기유통법에 신설된 금지행위 조항인 법 제9조제5항 위반행위를 신고사항으로 규정
 - 나. 과징금 부과 상한액 규정(안 [별표2] 개정)
 - 단말기유통법에 신설된 금지행위 조항인 법 제9조제5항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별칙 규정이 적용되는 법 제3조제1항 및 제9조제3항과 동일하게 매출액의 100분의2로 규정

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2. 26.
- 마감일자 : 2018. 4. 9.
-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업자 검증 등의 내용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05호, 2017.12.26. 공포, 2018.6.2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18. 6. . 공포, 6. .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종료시점지가의 검증 의뢰 및 검증 결과 보고 등(안 제7조의2, 안 제7조의3, 안 제16조의2)
 - 종료시점지가의 검증 의뢰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관련 자료, 감정평가업자가 검증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검증결과서와 관련 서식을 정비함.

8.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2. 26.

• 마감일자 : 2018. 4. 9.

-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업자 검증,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이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등 일부 비용 개발비용 인정, 개발부담금 납부수단으로 신용(직불)카드 추가 등의 내용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05호, 2017.12.26. 공포, 2018.6.2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업자 검증 생략 대상 및 검증절차 등(안 제11조제8항 및 제11조의2 신설)
 -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등 검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여 불필요한 검증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을 없애고, 검증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검증업무 수행의 원활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함
- 나.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후 산정·조정 대상 및 방법 등(안 제11조의3 신설, 안 제20조제1항)
 -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이후에도 개발비용으로 인정함에 따라 인정 대상과 산정·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개발부담금 환급 및 부과 업무 수행의 원활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함
- 다. 개발부담금 신용(직불)카드 납부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지정 취소, 납부대행수수료 등 명시(안 제22조의2 신설)
 - 개발부담금을 신용(직불)카드로 납부 가능함에 따라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지정 취소, 납부대행수수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카드납부 시행의 원활화를 기하고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분쟁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 라. 국토교통부장관 권한 부과·징수권자에게 위임(안 제28조제1항)
 - 개발부담금의 조정, 종료시점지가의 감정평가업자 검증 의뢰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함

9.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8. 2. 26. ● 마감일자 : 2018. 4. 9.
- 현행 특수학교의 진로전담교사는 보직교사를 두는 방식으로 배치되어 진로분야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확보나 업무의 지속성 담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질 높은 진로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학교에도 ‘진로진학상담’ 자격증을 보유한 교사의 확보가 필요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에 따라 중학교·고등학교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진로 진학상담’ 과목이 표시된 교사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를 진로전담교사로 의무 배치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10.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2. 27. ● 마감일자 : 2018. 4. 9.
- ‘재제조 대상 제품’ 공동 고시 규정을 폐지하여 다양한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재제조 산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재제조 품질인증 취소 근거를 상위법령에 명확히 하여 소비자 및 사업자를 보호하고자함. 또한 지방이양 확정사무의 후속조치로 인한 법률개정과 타법 개정에 따른 재제조 정의 인용 조문을 이동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재제조 대상제품 고시 폐지 (안 제23조)
 - 1) 현행법은 재제조 대상제품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고 있으며 재제조 대상 대상으로 고시된 제품만 품질인증 신청이 가능하여 포지티브 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 2) 재제조 대상제품 고시를 폐지하여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함으로써 재제조 산업 활성화 도모
 - 나. 품질인증 취소 근거 마련 (안 제22조)
 - 1) 현행법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인증기준에 미달할 경우 인증을

- 취소할 수 있어야 하나 법령이 아닌 고시로 인증 취소를 규정하고 있음
- 2) 품질인증의 취소는 관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이익처분으로 행정규칙이 아닌 상위법령에서 정할 사항으로 법제처 개선 요청에 따라 법률에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취소 규정을 신설하고 취소 기준 및 절차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

다. 타법 개정에 따른 재제조 정의 인용 조문 이동 (안 제2조)

- 1) 현행법은 제2조 재제조 정의시 타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인용하고 있으나 타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2조 제2호로 인용조문을 이동함.

라. 지방이양 확정사무 관련 법령 개정 (안 제8조)

- 1) 청정생산기술의 이전 · 확산을 위한 자금지원 사무의 지방이양이 확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법률 개정이 필요함.
- 2) 현행법 제8조 제2항 청정생산기술의 이전 · 확산을 위한 자금지원 사무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로 개정함.

11.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2. 27.
- 마감일자 : 2018. 4. 9.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기술의 융합과 데이터를 통해 신산업이 창출되고 있어,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던 측정 데이터의 수집 · 분석 · 평가체계 확립 등 정부의 참조 표준 정책 및 사업의 유형이 법률로 상향되어 개정됨(2017.12.12. 공포)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시행령에 참조표준에 관한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수집 · 축적 및 평가 등에 관한 사업을 전담기관이 수행하게 함으로써 참조 표준의 활용을 증가시킴과 아울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참조 표준의 제정 및 보급 사업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측정표준은 전세계적으로 국제기구의 절차로 개발 · 채택하여 사용함에 따라, 국가측정표준을 별도 규정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그간 채택된 실적도 없어 이와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행령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에 따른 삭제.(제14조제1항)

-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수집·분석·평가 체계 확립 등 정부의 참조표준정책 및 사업의 유형을 법률에 규정함(2017.12.12. 개정)에 따라 법률에 규정한 시행령의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나. 참조표준의 정의를 반영하여 사업내용 수정.(안 제14조제2항 개정)

- 법 제3조제6호에서 “참조표준”은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공인된 것으로서 정의하고 있으나, 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측정데이터”에 대해서만 다루고 이 외의 것은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따라, “정보”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 담아 참조표준 관련 사업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함.

다. 참조표준 사업 수행기관의 복수화.(안 제14조제3항 개정)

- 1)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표준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참조표준에 관한 측정데이터의 수집·축적 및 평가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던 것을 전담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2) 기존의 측정데이터 뿐만 아니라 신산업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에 대한 수집·축적 및 평가 등에 관한 사업이 필요하므로 수행주체를 분야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을 복수화 하고자 함.

라.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제20조제2호 및 제2호 삭제, 안 제20조제2호 신설)

-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의 삭제에 따라 이와 관련된 위임규정도 삭제하고자 함.

마. 국가측정표준의 개발 및 채택 규정 삭제(안 제11조 삭제)

- 측정표준은 전 세계적으로 국제기구인 국제도량형국(BIPM)에서 관리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되어 관리하는 CMC DB에 등재된 것을 사용하고, 별도의 국가측정표준을 정하여 운영하지 않고, 우리나라도 개발된 측정표준을 CMC에 등재시켜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갖추어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측정표준은 그간 제출·채택된 실적도 없어 이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CMC : 고객에게 일상적으로 제공되는, 95 %신뢰의 수준으로 표현된 최고 수준의 교정 또는 측정능력(Calibration and Measurement Capabilities)

12.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2. 27.

● 마감일자 : 2018. 4. 9.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기술의 융합과 데이터를 통해 신산업이 창출되고 있어,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던 측정데이터의 수집·분석·평가체계 확립 등 정부의 참조 표준 정책 및 사업의 유형이 법률로 상향되어 개정됨(2017.12.12. 공포)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시행령에 참조표준에 관한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수집·축적 및 평가 등에 관한 사업을 전담기관이 수행하게 함으로써 참조표준의 활용을 증가시킴과 아울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사업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측정표준은 전세계적으로 국제기구의 절차로 개발·채택하여 사용함에 따라, 국가측정표준을 별도 규정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그간 채택된 실적도 없어 이와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행령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에 따른 삭제.(제14조제1항)

-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수집·분석·평가체계 확립 등 정부의 참조표준정책 및 사업의 유형을 법률에 규정함(2017.12.12. 개정)에 따라 법률에 규정한 시행령의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나. 참조표준의 정의를 반영하여 사업내용 수정.(안 제14조제2항 개정)

- 법 제3조제6호에서 “참조표준”은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공인된 것으로서 정의하고 있으나, 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측정데이터”에 대해서만 다루고 이 외의 것은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따라, “정보”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 담아 참조표준 관련 사업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함.

다. 참조표준 사업 수행기관의 복수화.(안 제14조제3항 개정)

- 1)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표준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참조표준에 관한 측정데이터의 수집·축적 및 평가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던 것을 전담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2) 기존의 측정데이터 뿐만 아니라 신산업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에 대한 수집·축적 및 평가 등에 관한 사업이 필요하므로 수행주체를 분야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을 복수화 하고자 함.

라.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제20조제2호 및 제2호 삭제, 안 제20조제2호 신설)

-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의 삭제에 따라 이와 관련된 위임규정도 삭제하고자 함.

마. 국가측정표준의 개발 및 채택 규정 삭제(안 제11조 삭제)

- 측정표준은 전 세계적으로 국제기구인 국제도량형국(BIPM)에서 관리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되어 관리하는 CMC DB에 등재된 것을 사용하고, 별도의 국가측정표준을 정하여 운영하지 않고, 우리나라도 개발된 측정표준을 CMC에 등재시켜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갖추어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측정표준은 그간 제출·채택된 실적도 없어 이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CMC : 고객에게 일상적으로 제공되는, 95 %신뢰의 수준으로 표현된 최고 수준의 교정 또는 측정능력(Calibration and Measurement Capabilities)

1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8. 2. 27.
- 마감일자 : 2018. 4. 9.

-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도별 국제회의산업육성시행계획 수립·

시행을 의무화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토록 하는 내용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059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국제회의 산업육성시행계획의 수립, 기본계획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제회의산업육성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제회의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국제회의산업육성예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 나.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시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 하여야함. 이 경우 평가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의 의뢰할 수 있도록 함(국제회의산업육성예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14.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8. 2. 27. ● 마감일자 : 2018. 4. 9.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5375호, 2018. 2. 21. 개정, 2018. 8. 22. 시행)에 따라 시행령 관련 조항의 자구를 정리하고,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개정한 법에 따라 관련 조항 자구 정리(안 제50조제1항)
 - “법 제66조 및 제66조의2” 를 “법 제66조제3항 및 제66조의2 제2항” 으로 수정함
 - 나. 개정한 법에 따라 관련 조항 자구 정리(안 제50조제2항, 제50조의2 및 별표4)
 - “법 제66조”, “법 제66조의2”, “법 제66조제4호”, 및 “법 제66조제12호” 를 각각 “법 제66조제1항”, “법 제66조의2제1항”, “법 제66조제1항제4호” 및 “법 제66조제1항제12호” 로 수정함
 - 다.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수정·보완(안 별표 8)
 -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의 영업

정지 1개월 및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각각 600만원 및 1,800만원으로 정함

- 법 제66조제1항제11호의2에 따라 해당 공사가 완료되어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더 이상 명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받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간의 2분의1 수준으로 영업정지 기간을 정함

15.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2. 28. • 마감일자 : 2018. 4. 10.
-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위원장 및 정부측 위원의 자격기준이 완화되는 내용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개정(법률 제15197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빛공해방지위원회 위원장의 직위를 명시(안 제3조제1항 신설)
 - 개정 법령에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된 위원장의 직위를 “생활환경정책실장”으로 명확하게 규정
 - 나. 빛공해방지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완화(안 제3조제2항 신설)
 -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측 위원의 직급을 당초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에서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지명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조정

1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2. 28. • 마감일자 : 2018. 4. 9.
- 지자체의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의무를 신설하고, 폐기물 재활용 제품 또는 물품의 공급량·공급처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103호, 2017.11.28. 공포, 2018. 5.29. 시행)됨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주기 및 추진성과 평가방법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계획수립 주기(5년), 연도별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내용은 고시로 정함(안 제16조의2)

나. 재활용 제품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1) 입력사항(폐기물의 종류, 양 등),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 58조, 별표 15의2)

17.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2. 28.

● 마감일자 : 2018. 4. 9.

○ 재활용을 통해 생산·공급되는 제품·물질의 공급처, 공급량을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103호, 2017.11.28. 공포, 2018. 5.29.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활용 제품·물질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 8)

18.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 예고일자 : 2018. 2. 28.

● 마감일자 : 2018. 3. 13.

○ 직장내 성희롱 비위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성희롱 비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공무원 신분 은닉을 징계의결시 고려사유로 명시하며, 적극적으로 일한 공직자 보호를 위해 적극행정등 징계감면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희롱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강화

- 직장내 성희롱은 그 피해가 심각하여 예방 및 대책차원에서 징계양정기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함
- 나. 공무원 신분 은닉을 징계의결시 고려사유로 명시
 - 수사기관에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여 징계절차 진행이 지연된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시 고려토록 함
- 다. 적극행정등에 대한 징계감면 규정 마련
 - 적극적으로 일한 공직자 보호를 통해 적극적 공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감면 조항을 별도로 신설함

1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8. 2. 28. • 마감일자 : 2018. 4. 9.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생활안정지원대상자) 사망시 장제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법률 제 15207호, 공포일 2017.12.12, 시행일 2018.6.13.)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장제비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법률에서 위임한 장제비의 지급방법과 지급대상,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지급절차를 마련함(안 제7조의3 신설)
 - 나. 국외 거주 피해자에 대한 장제비 지급 신청의 접수·조사와 장제비 지급에 관한 권한을 여성가족부장관이 외교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함(안 제19조제1항제4호 신설)

20.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8. 2. 28. • 마감일자 : 2018. 3. 19.
- ·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식용란 자가검사 의무 등 내용으로 기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419호, ‘17.11.27~’ 18.1.7)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하여, 선별·포장 처리된 식용란의 재포장·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자가검사 의무 위반시 행정처분하도록 그 기준을 신설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의 식용란 처리요구 거부나 지연시 과태료 기준 마련(안 제61조, 별표 16)

-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식용란의 선별·포장 등 처리 요구를 거부하거나 지연처리 하는 경우 처분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나. 선별·포장 처리된 식용란의 재포장·판매 허용(안 별표 2의3)

- HACCP 인증을 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된 식용란이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해외작업장에서 포장되어 수입된 식용란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소매단위로 포장한 경우는 재포장·판매를 허용하도록 함

다.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식용란 자가검사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11)

-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자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결과 부적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축산물을 유통·판매한 경우 및 검사결과 위반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처분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함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2. 28.
- 마감일자 : 2018. 4. 9.

○ 단기보호 급여기간 조항 내용 중 수급자의 불편, 새로운 제도 적응 준비 기간 등을 고려, 제도 시행 시점 유예

○ 주요내용

가.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443호, 2016.11.7.> 개정 기존 기관에 대해서

2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2. 28.
- 마감일자 : 2018. 4. 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2항이 위임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규정(안 제11조제1항)
 - 시설급여, 단기보호, 주야간보호에 대한 장기요양요원을 규정하며, 방문요양급여의 장기요양요원에 사회복지사를 포함

23. 민법(친족·상속편)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8. 2. 28.
- 마감일자 : 2018. 4. 9.
- 1958년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 「민법」은 제정 이후 59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여전히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민법은 사법(私法)의 기본법으로서 상법 등 수많은 민사특별법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직접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이를 시대 변화에 맞도록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사법(私法) 체계의 기본법인 「민법」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며,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 및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은 현대 국어 문법에 맞도록 수정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일반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 민법 친족편·상속편(제767조~제1,118조)의 용어와 문장을 순화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어학적 관점, 법학적 관점 및 법실무의 관점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성안됨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의 표기를 한글화하되, 한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가 있는 경우 괄호로 한자를 병기하여 혼란을 방지함. 또한,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학계와 실무계에서 이미 확립되었거나 대체가 어려운 법률용어(예: 선의/악의, 하자, 공작물, 유류분, 참칭상속인)들은 개정대상에서 제외함
알기 쉬운 민법 만들기 사업 취지에 맞추어 내용의 개정은 없도록 함

○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에서 한자 표기를 삭제하되, 한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가 있는 경우, 해당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에 괄호로 한자를 병기하여 혼란을 방지함.

다만, 과실(果實또는 過失) 등 그 쓰임에 따라 의미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용어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용어의 경우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를 병기함.

(예)혈족(血族)(안 제767조), 인척(姻戚)(안 제767조), 친계(親系)(안 제772조), 파양(罷養)(안 제776조), 인지(認知)(안 제781조제5항), 중혼(重婚)(안 제810조)

나. 용어의 순화

(1) 일본식 한자어·표현 개선

일본식 한자어·표현을 개선하여 알기 쉬운 우리말 법률용어 사용을 도모함.

(예)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안 제777조), 相對方에對하여 → 상대방에게(안 제805조 등), 1町步, 600坪→ 9,917.36제곱미터, 1,983.47제곱미터(안 제1008조의3)

(2) 어려운 한자어 개선

쉽게 풀어 쓰거나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한자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용어를 개선함.

(예) 連署→ 잇따라 서명한(안 제812조제2항 등), 胞胎→ 임신(안 제820조)

- (3) 의미를 이해하는데 있어 혼란을 줄 수 있는 용어 개선 용어의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거나 포괄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정비함.

(예) 相當한 → 적절한(안 제955조 등) 또는 해당하는(안 제1014조 등), 目的→ 대상(제1082조 제1항 등) 또는 내용(제920조 등)

- (4) 지나치게 축약된 용어 개선

지나치게 축약되어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용어를 정비함.

(예) 死亡子→ 사망한 자녀(안 제857조), 最近親→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안 제1000조제2항), 前後의遺言→ 먼저 한 유언과 나중에 한 유언(안 제1109조)

- (5) 양성 평등을 반영하여 용어 개선

양성 평등이 강조되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용어를 개선함.

(예) 자 → 자녀(안 제781조 등), 親生子→친생자녀(제4편 제4장 제1절 제목), 양자 → 양자녀(안 제772조 등), 친양자 → 친양자녀(안 제809조 등)

- (6) 법률용어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게 풀어쓰거나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알기 쉽게 개선함.

(예)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 → 여러 성년후견인(안 949조의2제1항)

- (7) 일상적인 생활언어로의 개선

법률문장을 일상적인 생활언어와 일치시키기 위해 준말 사용을 원칙으로 함.

(예) 아니한 → 않은(안 제781조제5항 등), 하여야 → 해야(안 제812조제2항 등),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렇지 않다(안 제854조의2제1항 등)

다. 문장의 순화

- (1) 불명확한 표현의 명확화

의미가 불분명한 문장을 뜻이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표현을 개선함.

- (2)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변경

일본식 표현이나 한자어 사용 등 어색한 표현을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개선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3) 문법에 맞는 표현으로 변경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을 문법에 맞도록 변경함.

24. 민법(채권편)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8. 2. 28.

● 마감일자 : 2018. 4. 9.

- 1958년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 「민법」은 제정 이후 59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여전히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민법은 사법(私法)의 기본법으로서 상법 등 수많은 민사특별법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직접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이를 시대 변화에 맞도록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사법(私法) 체계의 기본법인 「민법」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며,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 및 어법에 맞지않는 표현은 현대 국어 문법에 맞도록 수정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일반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 민법 채권편(제373조~제766조)의 용어와 문장을 순화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어학적관점, 법학적 관점 및 법 실무의 관점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성안되었음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의 표기를 한글화하되, 한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가 있는 경우 괄호로 한자를 병기하여 혼란을 방지함 또한,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학계와 실무계에서 이미 확립되었거나 대체가 어려운 법률 용어(예: 선의/악의, 하자, 공작물, 유류분,

참칭상속인)들은 개정대상에서 제외함

알기 쉬운 민법 만들기 사업 취지에 맞추어 내용의 개정은 없도록 함

○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에서 한자 표기를 삭제하되, 한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가 있는 경우, 해당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에 괄호로 한자를 병기하여 혼란을 방지함.

다만, 과실(果實또는 過失) 등 그 쓰임에 따라 의미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용어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용어의 경우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를 병기함.

(예) 이행지(履行地)(안 제378조), 전보배상(填補賠償)(안 제395조), 과실상계(過失相計)(안 제396조), 분별(分別)(안 제439조), 현실제공(現實提供)(안 제460조)

나. 용어의 순화

(1) 일본식 한자어 · 표현 개선

일본식 한자어 · 표현을 개선하여 알기 쉬운 우리말 법률용어 사용을 도모함.

(예) 除却→ 제거(안 제389조제3항), 其他→ 그 밖의(안 제425조제2항 등)

(2) 어려운 한자어 개선

쉽게 풀어 쓰거나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한자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용어를 개선함.

(예) 換金市價→ 환율(안 제378조), 朽廢한 → 낡아서 쓸모없게 된(안 제622조제2항)

(3) 의미를 이해하는데 있어 혼란을 줄 수 있는 용어 개선 용어의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거나 포괄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정비함.

(예) 相當한 → 적절한(안 제381조 등), 目的→ 대상물(제375조제1항 등) 또는 내용(제3편제1장제1절 제목 등)

(4) 지나치게 축약된 용어 개선

지나치게 축약되어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용어를 정비함.

(예) 出財債務者→ 재산을 출연한 채무자(안 제425조), 受託保證

人→ 부탁받은 보증인(안 제441조 등)

(5) 법률용어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게 풀어쓰거나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알기 쉽게 개선함.

(예) 保全行爲→ 보존행위(제404조제2항, 제405조), 檢索의抗辯→ 집행의 항변(제437조)

(6) 일상적인 생활언어로의 개선

법률문장을 일상적인 생활언어와 일치시키기 위해 준말 사용을 원칙으로 함.

(예) 하여야 → 해야(안 제374조 등), 아니한다 → 않는다(안 제385조 제2항 등),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렇지 않다(안 제674조의6제2항 등)

다. 문장의 순화

(1) 불명확한 표현의 명확화

의미가 불분명한 문장을 뜻이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표현을 개선함.

(2)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변경

일본식 표현이나 한자어 사용 등 어색한 표현을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개선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3) 문법에 맞는 표현으로 변경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을 문법에 맞도록 변경함.

(4) 열거된 사항의 각 호 배열

복잡하고 긴 문장으로 된 조항을 각 호로 배열하여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함.

25. 민법(물권편)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8. 2. 28.

• 마감일자 : 2018. 4. 9.

○ 1958년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 「민법」은 제정 이후 59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여전히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민법은 사법(私法)의 기본법으로서 상법 등 수많은 민사특별법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직접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이를 시대 변화에 맞도록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사법(私法) 체계의 기본법인 「민법」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며,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 및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은 현대 국어 문법에 맞도록 수정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일반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과 함께 하는 법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 민법 물권편(제185조~제372조)의 용어와 문장을 순화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어학적 관점, 법학적 관점 및 법 실무의 관점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성안되었음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의 표기를 한글화하되, 한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가 있는 경우 괄호로 한자를 병기 하여 혼란을 방지함 또한,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학계와 실무계에서 이미 확립되었거나 대체가 어려운 법률 용어(예: 선의/악의, 하자, 공작물, 유류분, 참칭상속인)들은 개정대상에서 제외함

알기 쉬운 민법 만들기 사업 취지에 맞추어 내용의 개정은 없도록 함

-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에서 한자 표기를 삭제하되, 한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가 있는 경우, 해당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에 괄호로 한자를 병기하여 혼란을 방지함. 다만, 과실(果實또는 過失) 등 그 쓰임에 따라 의미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용어나 한글만으로는 이해가 어려운 용어의 경우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를 병기함.

(예) 혼동(混同)(안 제191조), 부종성(附從性)(안 제292조)

나. 용어의 순화

- (1) 일본식 한자어·표현 개선

일본식 한자어·표현을 개선하여 알기 쉬운 우리말 법률용어

사용을 도모함.

(예) 要하지 아니하는 → 필요하지 않은(안 제187조), 算入한 → 포함된(안 제357조제2항)

(2) 어려운 한자어 개선

쉽게 풀어 쓰거나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한자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용어를 개선함.

(예) 隣地→ 이웃 토지(안 제216조 등), 忍容할 → 참고 받아들일(안 제217조제2항), 閉塞→막힌(안 제222조 등), 溝渠→ 도랑(안 제229조제1항 등), 對岸→ 건너편 기슭(안 제229조제1항 등), 堰→ 둑(안 제230조), 蒙利者→ 이용자(안 제233조), 相隣者→ 서로 이웃하는 자들(안 제235조 등), 貯置할 → 모아 둘(안 제244조), 石造, 石灰造, 煉瓦造→ 돌·석회·벽돌로 지은(안 제280조제1항제1호), 委棄→ 소유권 양도의 의사표시(안 제299조)

(3) 의미를 이해하는데 있어 혼란을 줄 수 있는 용어 개선 용어의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거나 포괄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정비함.

(예) 相當한 → 적절한(안 제203조제3항 등), 目的→ 대상(안 제191조제1항 등)

(4) 지나치게 축약된 용어 개선

지나치게 축약되어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용어를 정비함.

(예) 得失變更→ “취득·상실·변경(안 제186조), 前後兩時→ 전후 두 시점(안 제198조), 高地所有者→ 높은 곳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안 제221조제2항)

(5) 법률용어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게 풀어쓰거나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알기 쉽게 개선함.

(예) 지료 → 토지 사용의 대가(이하 “지료” 라 한다)(안 제286조), 要役地→ 편익을 받는 토지[이하 “요역지(要役地)” 라 한다](안 제292조), 承役地→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이하 “승역지”(承役地) 라 한다](안 제293조)

(6) 정확하고 올바른 용어로 개선

법률적인 의미에서 잘못 규정되었거나, 법 전체의 통일성을 위해

표현을 일치시키는 등 용어를 정비함.

(예) 同一한사람에게歸屬한때 → 동일한 자에게 귀속된 경우(안 제191조제1항), 이웃사람 → 이웃(안 제216조제1항), 代理占有의禁止 → 점유 금지(안 제332조)

(7) 일상적인 생활언어로의 개선

법률문장을 일상적인 생활언어와 일치시키기 위해 준말 사용을 원칙으로 함.

(예) 하여야 → 해야(안 제186조 등), 아니한다 → 않다(안 제187조 등),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렇지 않다(안 제192조 등)

다. 문장의 순화

(1) 불명확한 표현의 명확화

의미가 불분명한 문장을 뜻이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표현을 개선함.

(2)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변경

일본식 표현이나 한자어 사용 등 어색한 표현을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개선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3) 문법에 맞는 표현으로 변경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을 문법에 맞도록 변경함.

(4) 열거된 사항의 각 호 배열

복잡하고 긴 문장으로 된 조항을 각 호로 배열하여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함.

26. 민법(총칙편)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8. 2. 28.
- 마감일자 : 2018. 4. 9.

○ 1958년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 「민법」은 제정 이후 59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여전히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민법은 사법(私法)의 기본법으로서 상법 등 수많은 민사특별법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직접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이를 시대 변화에 맞도록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사법(私法) 체계의 기본법인 「민법」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며,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 및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은 현대 국어 문법에 맞도록 수정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일반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 민법 총칙편(제1조~제184조)의 용어와 문장을 순화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어학적 관점, 법학적 관점 및 법 실무의 관점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성안되었음.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의 표기를 한글화하되, 한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가 있는 경우 괄호로 한자를 병기하여 혼란을 방지함 또한,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학계와 실무계에서 이미 확립되었거나 대체가 어려운 법률용어(예: 선의/악의, 하자, 공작물, 유류분, 참칭상속인)들은 개정대상에서 제외함.

알기 쉬운 민법 만들기 사업 취지에 맞추어 내용의 개정은 없도록 함

-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에서 한자 표기를 삭제하되, 한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가 있는 경우, 해당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에 괄호로 한자를 병기하여 혼란을 방지함. 다만, 과실(果實또는 過失) 등 그 쓰임에 따라 의미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용어나 한글만으로는 이해가 어려운 용어의 경우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를 병기함.

(예) 추인(追認)(안 제15조), 유증(遺贈)(안 제47조), 비치(備置)(안 제55조제1항), 소급(遡及)(안 제133조)

나. 용어의 순화

- (1) 일본식 한자어·표현 개선

일본식 한자어·표현을 개선하여 알기 쉬운 우리말 법률용어

사용을 도모함.

(예) 假住所→ 임시주소(안 제21조), 其他→ 그 밖의(예)(안 제32조 등), 窮迫→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안 제104조), 要하지아니한다 → 필요가 없다(안 제117조 등)

(2) 어려운 한자어 개선

쉽게 풀어 쓰거나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한자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용어를 개선함.

(예) 懈怠한 → 게을리한(안 제65조 등), 催告→ 촉구(안 제89조 등), 相對方과通情한虛偽의 意思表示→ 상대방과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표시(안 제108조), 葬具→ 장례 도구(안 제164조 제2호)

(3) 의미를 이해하는데 있어 혼란을 줄 수 있는 용어 개선 용어의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거나 포괄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정비함.

(예) 相當한 → 적절한(안 제26조제1항 등), 目的→ 내용(제163조 제1호 등)

(4) 지나치게 축약된 용어 개선

지나치게 축약되어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용어를 정비함.

(예) 表意者→ 의사표시자(안 제107조 등), 復任權→ 복대리인 선임권(안 제120조)

(5) 정확하고 올바른 용어로 개선

법률적인 의미에서 잘못 규정되었거나, 법 전체의 통일성을 위해 표현을 일치시키는 등 용어를 정비함.

(예) 人→ 자연인(안 제1편제2장 제목), 取消→ 철회(안 제7조 및 제8조), 심판 → 재판(안 제9조 등)

(6) 일상적인 생활언어로의 개선

법률문장을 일상적인 생활언어와 일치시키기 위해 준말 사용을 원칙으로 함.

(예) 하여야 → 해야(안 제2조 등),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렇지 않다(안 제5조 등), 아니한 →않은(안 제9조 등)

다. 문장의 순화

(1) 불명확한 표현의 명확화

의미가 불분명한 문장을 뜻이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표현을 개선함.

(2)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변경

일본식 표현이나 한자어 사용 등 어색한 표현을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개선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3) 문법에 맞는 표현으로 변경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을 문법에 맞도록 변경함.

(4) 열거된 사항의 각 호 배열

복잡하고 긴 문장으로 된 조항을 각 호로 배열하여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함.

27.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2. 28.

• 마감일자 : 2018. 4. 9.

○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의 사전통지 기간이 짧아 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국민 권익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기간 연장(안 제29조 개정)

-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조사개시 7일전 통지)를 반영하여 방송통신사업자에 통계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출기간을 5일이상에서 7일이상으로 개정

29.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8. 2. 28.

• 마감일자 : 2018. 4. 9.

○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상금의 현재가치화 방법 규정(안 제2조)

- 보상금은 제2연평해전 당시의 소비자물가지수와 보상금 산정 기준일의 소비자물가지수 간 비율을 곱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함.

나. 보상금 지급 신청방법 및 첨부 서류 규정(안 제3조)

- 보상금은 유족 본인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유족이 이민·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령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보상금 지급 및 환수업무의 국가보훈처장 위탁규정 명시(안 제7조)

- 국방부장관이 결정한 보상금은 국가보훈처장이 지급하며, 보상금이 잘못 지급되는 경우 등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가보훈처장이 환수하도록 함.

29.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3. 2.

● 마감일자 : 2018. 4. 11.

- 개정 발명진흥법에서 특허공제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 서식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년창업자를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으로 추가함(안 제9조의10 개정)

나.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 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며, 평가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평가업무 수행을 위한 관리조직의 보유여부를 추가함(안 제12조 개정 및 서식 제3호의5 신설)

다. 발명진흥법에서 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재원 조성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규정(안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 신설)

- 1) 특허공제사업을 운영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발명진흥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청장이 특허공제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구체화 함
- 2) 특허공제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특허공제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특허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기업, 지식재산 관련 기관

- 단체 · 조합 및 그 밖의 자의 출자금을 추가함
- 3) 특허청장이 위탁기관을 관리 ·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허공제사업 운영방법 · 절차 및 공제계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고시하도록 함

30.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8. 3. 2. • 마감일자 : 2018. 4. 11.
- 국산 목재 및 목재제품의 우선구매 내용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078호, 2017.11.28. 공포, 2018.5.29.시행)됨에 따라 국산 목재 및 목재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산 목재 및 목재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8조의2)
 - 국산 목재 및 목재제품 우선구매가 적용되는 조달계약의 기준 금액 및 조달계약 시 국산 목재 및 목재제품 우선구매 비율에 대한 기준 마련

31.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폐지(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8. 3. 2. • 마감일자 : 2018. 4. 12.
- 사법시험법이 폐지됨(법률 제9747호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 제2조)에 따라 그 하위 법령인 사법시험법 시행규칙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32. 사법시험법 시행령 폐지(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8. 3. 2. • 마감일자 : 2018. 4. 12.
- 사법시험법이 폐지됨(법률 제9747호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 제2조)에 따라 그 하위 법령인 사법시험법 시행령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3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 예고일자 : 2018. 3. 2.
- 마감일자 : 2018. 4. 11.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문화재청장이 우수 이수자를 선정·지원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5173호, 2017.12.12. 공포, 2018.6.13. 시행)됨에 따라 이수자의 추천서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이수증 발급 서식 보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수교육학교의 우수 이수자 추천 서식 신설(안 제17조의2, 별지 제18호의2서식)
 - 나. 이수증 서식 수정·보완(별지 제14호서식)
 - 현재의 이수증 양식으로는 종전 보유자(단체)가 발급한 이수증의 재발급 업무를 수행키 어려워 기존 이수증 서식을 수정·보완

3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 예고일자 : 2018. 3. 2.
- 마감일자 : 2018. 4. 11.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문화재청장이 우수 이수자를 선정·지원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5173호, 2017.12.12. 공포, 2018.6.13. 시행)됨에 따라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보유단체 법인 설립 기한, 전수교육경비 지원 중단 사유 추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보유단체 법인 설립 기한 설정(안 제16조 제4항)
 - 보유단체 인정이 관보에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민법

제49조에 따라 법인 설립 등기 완료

나. 전수교육경비 지원 중단 사유 추가 규정(안 제22조 제2항)

-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보유단체에서 제명되거나 보유단체 인정 관보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전수교육경비 지원 중단

다.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 내용 신설(안 제22조의2)

- 3년 이상 된 이수자 중에서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하고, 공연·전시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지원 중단 사유 등을 규정함

라. 우수 이수자 선정·지원 권한을 국립무형유산원의 장에게 위임(안 제35조)

35.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

● 예고일자 : 2018. 3. 2.

● 마감일자 : 2018. 3. 7.

○ 관세청의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한 기구(감찰팀·기획심사팀·국제조사팀 및 국제협력팀)의 존속기간을 2018년 3월 22일까지에서 2021년 3월 22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액인건비제로 활용하여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3년 연장

- 존속기간을 2018년3월22일까지에서 2021년 3월 22일까지로 연장

3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8. 3. 5.

● 마감일자 : 2018. 3. 19.

○ 대학, 연구소, 공기업 등 R&D 보유 역량이 우수한 핵심기관 중심의 소규모 집약 공간을 가지는 특구지정 방식을 도입하고 연구소기업 설립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특구관리 측면의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강조연구개발특구 지정제도의 도입 (안 제5조제2항 신설)

- 1) 강소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특구 조성과 육성에 관해 시·도와 핵심 기관간 역할·기능·책임 협약, 특구 지정 심사를 위한 체계적인 요건을 명시
 - 2) 강소특구의 핵심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학, 연구소, 공기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성격과 역량, 검증 조건을 정함
 - 3) 강소특구의 효율적 지정과 관리를 위해 전체 강소특구 지정면적에 대한 총량, 산출방법 등을 설정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제도를 운영함
- 나. 연구소기업의 자본규모에 따른 등록 요건 완화 및 설립주체 확대 (안 제3조 제6~7호 신설, 제13조제5항 및 제14조의2제1항 개정)
- 1)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소기업 설립 최소 지분율을 현행 20%에서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중대형 연구소기업 설립의 활성화 도모
 - 2) 공공연구기관의 범위에 R&D를 수행하는 공기업, 연구중심병원을 포함하여 연구소기업의 설립 주체를 확대
 - 3) 연구소기업 설립 시 최소 지분율 완화와 연계한 등록 취소 요건을 명시
- 다. 특구관리 관련 규제 개선 (안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 및 제34조 개정)
- 1) 특구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범위를 확대하고, 창업보육 센터 등에 임차 입주하는 소기업에 대한 입주승인 절차를 간소화
 -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14.1) 내용을 반영하고,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융복합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시설구역을 세분하여 산업복합구역을 신설
 - 3) 도시계획시설 부지와 신기술·신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용도구역별 건축물 용도규제 적용 예외 규정을 도입하고 각 용도 구역별 허용 건축물 종류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개선
 - 4) 교육·연구 및 사업화 구역에서 부지 등의 양도가격 산정 시 현재 전체 특구에 동일하게 적용하던 것을 대덕연구개발특구 제 I 지구와 그 외 특구로 이원화하여 양도기준을 명확히 함

37.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계청)

• 예고일자 : 2018. 3. 6.

• 마감일자 : 2018. 3. 12.

- 2018년도 소요정원을 반영하여 통계청에 신규행정통계 개발 및 기반 강화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인구·가계 추계 기간 단축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과 소득통계 정확성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고용정책 이슈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통계개발원에 안전통계개발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동남지방통계청장 및 충청지방통계청장 직급을 상향(4급→3·4급)하며, 2017년 5년 주기 표본개편과 세종시 통계생산, 농어업통계 대표성 향상 등을 사유로 지역별 통계조사 대상 표본이 크게 변동됨에 따라 지방통계청간 공무원 정원 조정을 위하여 동북지방통계청의 8급 2명, 9급 1명과 호남지방통계청의 9급 7명을 감축하여, 경인지방통계청에 8급 1명 및 9급 2명, 충청지방통계청에 8급 1명 및 9급 6명을 각각 증원하며, 업무효율성 증진을 위해 소속기관(경인지방통계청과 동북지방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의 시간선택제공무원 직급별 정원 일부(9급 3명)를 조정하고,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고, 민·관협업 총괄 부서 지정 등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8.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 예고일자 : 2018. 3. 6.

• 마감일자 : 2018. 3. 9.

- 인사혁신처에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수요 증가 대응 및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프로그램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4·5급 1명, 5급

3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 39 -

거부·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동법 제44조(과태료) 제1항에 마련토록 함

4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3. 6.
- 마감일자 : 2018. 4. 16.
-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중 주거환경중심 평가 항목의 변경에 따라 구조·주거환경 종합평가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재건축 안전진단 중 주거환경 중심 평가를 구조·주거환경 종합평가로 수정 (안 제3조)

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3. 6.
 - 마감일자 : 2018. 3. 15.
-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등급이 D 또는 E 등급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이 사업 추진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운영되어 자원낭비와 투기수요를 유발함에 따라 필요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인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 또는 E 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제3항)
- 나.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필요시 현지조사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현지조사를 의뢰 받은 기관은 2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안 제10조제4항 신설)

42.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8. 3. 6.

• 마감일자 : 2018. 4. 16.

- 지문등 사전등록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문등의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한 후에는 해당 신청서를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실종아동등의 위치를 조속히 확인하여 발견함으로써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실종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이 인터넷 주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관련 사업자에게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4924호, 2017. 10. 24., 일부개정) · 에 따라 관련 서식을 마련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문등정보 신청서 파기대장 신설(안 제3조제5항)

나. 인터넷주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서 신설(안 제8조제2항, 제3항)

다. 개인위치정보등 요청 대장 신설(안 제8조제4항)

라. 개인위치정보등 파기 대장 신설(안 제8조제5항)

4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3. 7.

• 마감일자 : 2018. 4. 16.

-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시점을 시설의 설치·운영 전에서 시설의 운영 전으로 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이 개정(법률 제15201호, 2017.12.12. 공포, 2018.6.13.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주요내용

가.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제도 구체화(안 제13조의2)

개정(법률 제12666호, 2014.5.21.공포, 2014.11.22.시행),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와 관련하여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3544호, 2015.12.1.공포, 2016.6.2.시행),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 민간협업 총괄부서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8358호, 2017.10.17.공포, 2017.10.17.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보좌업무인 비상대비업무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지원업무를 혁신기획담당관으로, 원자력시설 물리적 방호업무 등을 원자력통제과로 이관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부서 간 업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4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3. 7.
- 마감일자 : 2018. 4. 17.
- 대부업의 대형화 및 전문화에 따른 전문적 감독 확대 필요성 및 대부업 종사자의 법규준수 역량 제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의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대부업체 임직원에게 대한 교육의무를 강화하며, 매입채권추심업자의 불법·불건전 추심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입채권추심업자가 등록시 갖추어야 하는 자기자본액을 상향 조정하고 이용자 보호 기준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대부업자가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부할 수 있도록 소득·채무관계서류를 갖춰야 하는 대부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간의 최고금리 인하 및 대부중개영업의 수익 확대 추이를 감안하여 대부중개수수료의 상한을 하향조정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위 등록대상 확대(안 § 2의6)

- 대부업의 대형화 및 전문화에 따른 전문적 감독 확대 필요성을 감안하여 금융위 등록 대상이 되는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을 현행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확대 조정함.

나. 대부업 등록시 교육 이수 의무 강화(안 § 2의8)

- 대부업체 종사자의 전문성과 법규준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임직원의 범위를 업무총괄사용인과 업무총괄사용인을 포함한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으로 확대함.

다. 매입채권추심업자 재무요건(자기자본요건) 강화(안 § 2의9)

- 매입채권추심업 등록시 갖추어야 하는 자기자본액을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여 무분별한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진입·이탈에 따른 난립과 불법·불건전 추심 확대 우려를 방지함.

라. 금융위 등록대부업자의 신용조회 의무화(§ 4의3 등)

-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하려는 경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제14조에 따른 신용조회회사를 통한 신용정보조회서류를 갖추도록 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 평가 역량을 제고함.

마. 대부업자의 채무자 소득·채무 확인 면제 축소(안 § 4의3)

- 대부업자가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만 29세 이하 청년층과 만 70세 이상 노령층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고 대부계약을 하도록 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 평가없이 무분별한 대출을 하지 않도록 유도함.

바.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강화(안 § 6의6)

- 채무자 피해 유발 우려가 큰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대해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의 도입을 의무화하고,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의 내용으로 채권 불건전 추심·매매 및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 업무를 위한 절차 및 기준을 추가함.

사.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하향 조정(안 § 6의8)

- 최고금리 인하 및 대부중개영업의 수익 확대 추이를 반영하여 ‘13.6월 당시 도입된 중개수수료 상한을 현행 최대 5% 이내에서 최대 4% 이내로 하향 조정함.

아. 연체 가산이자율 관련 규율 구조 정비(안 § 9 등)

- 연체 가산 이자율 규제의 통일적 규율을 위해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이원화된 규제 체계를 금융위원회로 일원화함.

자.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의 업무범위 확대(안 § 11의2)

- 대부업 감독 범위의 확대 및 전문화 추이를 반영하여 법 제18조의2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의 업무를 자율규제 업무, 대부업계 공동 사업 등으로 확대함.

차. 시정명령 처분 심사 업무 금감원 위탁(안 § 11의3)

- 최고금리 및 대부중개수수료 관련 대부업 규제 위반시 제재인 시정명령 처분에 관한 심사 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함.

47. 육군학생군사학교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8. 3. 7.

• 마감일자 : 2018. 4. 16.

○ 육군학생군사학교 교육체계 정립을 위한 부대개편과 실제 학교 운용을 고려 부대령의 미비점 정비를 위한 부대령 일부 개정임.

○ 주요내용

가. 전술담임교관제 도입 등에 따른 학교부대 편성 표준화와 연계, 관련 부대령 조항 개정(안 제3조④⑤⑥항)

나. 학교 이전(‘11. 11월, 경기 성남→충북 괴산)후 학군사관후보생의 위탁교육 방식의 변화를 고려 조항 수정(안 제5조)

다. 학교 이전 후, 학군단장, 교관 등의 군사교육요원에 대한 교육을 미실시함에 따라 관련조항 삭제(안 제1조②항4호)

라. 기존 3사교에서 실시했던 준사관후보생 교육과정을 학군교로 이관함에 따른 관련조항 신설(안 제1조②항4호)

마. 대학별 학군단의 통합 운용 조항 신설(안 제3조③항)

바. 어색한 표현 수정(안 제6조)

48.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3. 8.
- 마감일자 : 2018. 4. 17.
-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법률 제15290호, 2017.12.26. 공포, 2018.6.27. 시행)됨에 따라 새마을금고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세부기준과 금고 및 중앙회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시 부령으로 위임한 그 세부기준을 정함(안 제11조의2)
 - 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에 대한 행정처분 시 부령으로 위임한 그 세부기준을 정함(안 제11조의3)

49.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3. 8.
- 마감일자 : 2018. 4. 17.
-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법률 제15290호, 2017.12.26. 공포, 2018.6.27. 시행)됨에 따라 새마을금고 선거관리위원회 외부위원 자격요건 및 공명선거감시단 구성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위원회 외부 감사위원과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새마을금고 선거관리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외부위원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10조의3)
 - 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직무 등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정함(안 제10조의4)
 - 다. 공명선거감시단의 구성·운영·직무 등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정함(안 제10조의5)
 - 라. 불공정거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유형 및 기준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16조의2, 안 제58조의2)
 - 마. 중앙회 감사위원회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가 3명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24조의2)

바.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중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51조의3)

50. 주민등록표 등·초본 제출요구 감축을 위한 국가배상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3. 8.

● 마감일자 : 2018. 4. 17.

- 단순한 신분확인용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로 가능함에도 행정기관이 등·초본 제출을 불필요하게 요구하여 발생하는 주민불편을 해결하고, 1인에 대한 정보는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 가능함에도 전체 세대원 정보가 기재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과도한 정보 요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단순한 신분확인용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로 가능함에도 행정기관이 등·초본 제출을 불필요하게 요구하여 발생하는 주민불편을 해결하고, 1인에 대한 정보는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 가능함에도 전체 세대원 정보가 기재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과도한 정보 요구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5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8. 3. 8.

● 마감일자 : 2018. 4. 17.

- 해양생태계 훼손 행위에 대해 원인자 부담 목적으로 부과하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과 그 가산금의 징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 징수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을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 하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135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부과·징수비용의 사용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양생태계 보전·관리와 관련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내용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서술하고, 해양보호구역 관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재조정하는 한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함.

○ 주요내용

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제외사업 추가(안 제25조제3항)

- 1)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내에서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해양 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제거사업, 해양생물종 및 서식지 복원사업은 협력금 부과대상사업에서 제외함.

나.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교부금의 용도 등(안 제29조)

- 1)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 징수액의 100분의 10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협력금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수입으로 바로 귀속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력금 및 가산금 징수액 중 시·도지사에게 교부하는 교부금의 일부를 협력금의 부과·징수비용으로 사용토록 하는 내용이 불필요해지게 되어 이를 삭제함.
- 2)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 징수액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에 교부하는 경우, 교부금의 사용 용도를 해양생태계와 생물종의 보전 및 복원 사업 등으로 정함.

다.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금 감액기준 구체화 근거 마련(안 제30조 제8항)

- 1) 협력금 반환사업의 효과에 대한 판단기준, 감액 산정기준 등 반환금 감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행정청의 자의적인 감액기준 운영에 따른 행정의 예측가능성 저해 및 재정누수가 우려됨에 따라 반환금 감액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라. 해양생태계 보전·관리와 관련한 소속기관 또는 시·도지사 위임 사무에 대하여 알기 쉽게 조문을 정리하고 및 사무를 재조정 (안 제35조)
- 1) 시·도지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기술방식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표현
 - 2)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와 행위중지 또는 원상회복 명령 등의 조치가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시·도지사로 일원화함
- 마. 효율적으로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전문기관 위탁하는 사무를 추가함 (안 제35조의2)
- 1)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포함)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업무를 추가함
 - 2) 시·도지사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업무를 추가함. 특히 시·도지사가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려 하거나 또는 이미 지정된 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추가함

52.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 예고일자 : 2018. 3. 8.
 - 마감일자 : 2018. 3. 12.
- 통일부에 남북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인력 1명(5급 1명), 남북자 지원 업무를 수행할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9급 1명) 및 정보보안 관제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북한이탈주민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 9명(5급 4명, 8급 5명)을 증원하며, 통일교육원에 성과관리 전담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한 성과평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총액인건비제도 개선에 따라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범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통일부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주사 10명을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0명으로, 행정주사보 7명을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7명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53.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 예고일자 : 2018. 3. 8.

● 마감일자 : 2018. 3. 12.

-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이버 보안 강화 및 능동적 대응을 위해 전담인력 2명(전산 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온라인·모바일 홍보콘텐츠 제작, SNS 소통 강화 등 온라인 정책홍보 강화를 위해 직렬 조정(일반직 6급 1명 → 임기제 6급1명)을 통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학교 급식실 운영내실화를 위해 결원직위의 전환을 통해 조리 인력을 보강(사무운영 9급 2명 → 조리 9급 2명)하고, 소속기관(지방청)의 관리운영직 퇴직에 따른 일반직 전환(사무운영 9급 1명, 열관리운영 9급 1명 → 행정 9급 1명, 공업 9급 1명)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민간의 전문성 활용을 위한 본부 개방형직위(과장급) 자리를 추가하는 한편, 파견 및 이관인력의 인사 운영을 위해 환경직렬 및 방송통신직렬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정보보안 관제센터 전담인력 증원 : +2명(전산 7급 1명, 8급 1명)
 - 중소벤처기업부 사이버 보안 강화 및 능동적 대응을 위한 전담인력 2명(전산 7급 1명, 8급 1명) 증원
 - * 기정원에서 위탁 운영 중인 ‘사이버 보안센터’ 전담 배치
- 나. 온라인 홍보 임기제 공무원 충원 : ±1명 (6급1→임기제6급1)
 - 온라인 정책홍보 비중 증대에 따라 대변인실에 온라인·모바일 홍보콘텐츠 제작, SNS 소통 강화 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
 - * 충정원 변동 없이 직렬 조정을 통한 인력 확보
- 다. 국립공고 조리직 직렬 조정 : ±2명 (사무운영9급2→조리9급2)
 - 전북기계공고 및 구미전자공고의 학교 급식실 운영 내실화를 위해

결원 직위*를 활용하여 조리 인력 보강

* 현재 전북공고 및 구미공고 사무운영 9급 각 1명씩 결원

라. 소속기관(지방청) 관리운영직 퇴직에 따른 일반직 전환 (사무운영 9급 1명, 열관리운영 9급 1명 → 행정 9급 1명, 공업 9급 1명)

- 소속기관(서울중기청 및 부산중기청) 관리운영직 퇴직에 따른 일반직 전환 근거 마련

마. 총액인건비제 인력증원 기준 상향 및 과명칭 변경

-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 개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 기관 인력 증원 한도 상향(3%→5%)

- 정부혁신기능 정비로 과명칭 변경 : 행정법무담당관 → 혁신행정 법무담당관

바. 소상공인정책과 업무분장 중복 조항 삭제

- 소상공인정책과 업무 분장 조항 중 일부 중복 문항 삭제

* 소상공인 폐업 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 소상공인 통계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세제지원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전용 케이블 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 등 4개 중복 조항 삭제

사. 부처 이관 인력 및 파견 인력 해당 직렬 정원표 반영

- 직제 제 26조*에 명시된 환경부 파견 정원(5급 1명)을 위한 본부 정원표 반영(환경분야 규제전문성 확보(옴부즈만지원단))

-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에 따른 미래부 이관 인력 중 방송통신직렬 본부·소속기관 정원표에 반영

* (본부) 방송통신서기 추가(방송통신 사무관·주사·주사보는 기반영) (지방청) 방송통신 사무관·주사·주사보·서기 추가

아. 한시조직 정원표(본부 정원표 연동 반영) 및 지방청 정원표 수정

- (한시조직) 해외진출지원담당관 및 정책평가조정과, 거래환경개선과 등 신설 조직에 두는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 조정

- (현행) 4급3, 5급3, 6급2 → (수정) 4급3, 5급2, 7급3 ⇒ 5급△1, 6급△2, 7급+3

- (지방청) 4.5급 누락인원(6명) 정원표 반영 및 전산사무관 직렬 추가

자. 개방형 직위(과장급) 확대

- 판로 정책 수립 시 민간 전문성 활용을 위한 판로정책과장 개방형

직위 추가

- (현행) 홍보담당관, 고객정보화담당관, 지역특구과장, 거래환경개선과장, 대구·경북청 및 광주·전남청 공공판로지원과장(총 6개)
- (확대) 판로정책과장 추가(총 7개)

54.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 예고일자 : 2018. 3. 8.

● 마감일자 : 2018. 3. 12.

- 문화재청에 동산문화재 보존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2명), 등록 문화재 정기조사에 필요한 인력 3명(6급 2명, 연구사 1명), 공항·항만 등에서 문화재 불법반출 방지 및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22명(6급 15명, 7급 7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무형유산원에 무형문화재 기념관의 전시·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증원하며,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시행)가 개정되고, 문화재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에 가야출토유물 관리와 보존처리에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책임운영기관 성과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며,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재청에 2명(7급 2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한편, 공항·항만 등에서 문화재 불법반출 방지 및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의 임기제공무원으로 증원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액인건비 활용한 인력증원 상한 상향 조정(안 21조제1항, 안 제22조 제3항, 제9항, 제11항, 제12항 및 제13항)

- (현행) 총정원의 3퍼센트 → (개정안) 총정원의 5퍼센트

나. 임기제공무원 임용 근거 규정 신설(안 21조제2항)

- 홍보업무(5급 1명), 주한미군 기지 문화재 보호업무(6급 1명), 문화재 불법반출 방지 및 감정업무(6급 15명, 7급 7명)

다.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관련 규정 신설(안 제24조)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립 문화재연구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평가대상 조직과 정원에 대한 평가기간 등 규정

라. 기타 정시직제 증원(본청 28명, 소속기관 5명), 총액인건비 활용한 증원(2명) 반영 위한 정원표 개정(별표 5, 별표 5의2, 별표 15, 별표 15의2), 평가대상 조직과 정원 및 평가기간을 규정한 별표 18 신설 등

55.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

● 예고일자 : 2018. 3. 8.

● 마감일자 : 2018. 3. 13.

○ 기상청에 기상기후 감시 및 예측정보 대국민서비스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을, 기상청 소속기관에 기상관측 연구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명(7급3, 연구관3, 연구사6)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호, 2018. . . 공포·시행)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호, 2018. . .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며,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 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18. . .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진·지진해일·화산 정책·관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진화산센터의 명칭을 지진화산국으로 변경하여 대·내외 기능을 명확히 하며,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는 한편, 국가재난관리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팀 단위 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총액인건비 제가 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조직의 업무를 분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56.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8. 3. 8.

• 마감일자 : 2018. 3. 13.

- 우정사업본부에 우체국보험 상품 개발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펀드 판매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산업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지방우정청에 대국민 우편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력 748명(우정9급)을 증원하며,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도록 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개방형 직위의 합리적 운영과 행정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부산 연제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4급 우체국의 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며, 마산 회원구·합포구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4급 우체국의 국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5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8. 3. 8.

• 마감일자 : 2018. 3. 1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인 복지향상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통신서비스 이용가능지역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지능정보사회주파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정보보안 관제센터 전담 인력 1명(7급 1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에 해상·항공 중요주파수 교란 감시에 필요한 인력 6명(6급 1명, 7급 5명)을 증원하고, 국립중앙과학관에 첨단연구성과종합전시관 건립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 정원표에 반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려는 것임.

58.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8. 3. 8.

• 마감일자 : 2018. 3. 13.

- 고용노동부에 새로운 고용환경에 대한 일자리 변화 대응을 강화하고 국가고용정보 플랫폼 구축 등 데이터 중심의 고용노동행정혁신을 위해 필요한 인력 5명(5급2명, 6급3명)을 증원하고 이 중 1명(5급1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해외진출 기업 및 투자액 증대 등

수요대응과 정보보안 관제인력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3명(6급1명, 7급1명, 8급1명)을 증원하며,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신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며, 산업현장 중대사고의 예방과 대응 등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감독관 및 산업안전감독관 인력 300명(6급 90명, 7급 150명, 8급60명)과 충청북도 내 유해화학물질 영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인력 9명(5급1명, 6급4명, 7급4명)을 증원하고, 고용센터의 내실 있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인력 100명(8급30명, 9급70명)과 외국인력 관리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6명(7급 16명)을 증원하고, 기존에 취업지원 등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던 고용 센터를 고용 및 복지가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처 간 협업의 공간 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부산사하고용센터 등 12개 고용센터를 신설하면서 취업지원 등 고용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34명(5급 6명, 7급 6명, 9급 22명)을 증원하면서 신설되는 고용센터 중 밀양고용 센터 등 6개 고용센터 소장에 보하는 6급 6명의 직급을 5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 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 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기관별 총 정원의 5%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00.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 등을 반영하는 한편,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 중인 고객상담센터에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 및 처리 업무를 지역협력과 또는 고용관리과에서 일원화하여 담당하도록 고용센터 및 고용관리과, 지역협력과의 부서간 기능을 조정하고, 종전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7급 2명을 고용노동부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59.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3. 9.

• 마감일자 : 2018. 3. 14.

- 환경부에 자원순환기본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정보보안관제센터 전담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 환경위성센터를 신설하여 환경위성 개발, 위성자료분석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14명(연구관 5명, 연구사 9명)을 증원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자원순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 및 통합허가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력 3명(연구관 2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유역·지방환경청에 화학사고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7명(5급 1명, 6급 12명, 7급 17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6명), 한강유역환경청에 배출시설 환경감시 및 환경범죄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9급 2명),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주지역 환경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8급 1명, 9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에 유전자원정보센터를 신설하여 유전자원법 관련 국가 의무 수행 및 산업계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화학물질안전원에 사고예방 심사2과를 신설하여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심사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46명(연구관 8명, 연구사 17명, 전문경력관 가군 6명, 전문경력관 나군 15명)을 증원하고, 화학사고 신고·접수·대응을 위해 필요한 인력 6명(전문경력관 나군 6명)을 증원하며, 환경부에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새만금지방환경청에 새만금환경생태용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각각 증원하는 한편,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 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60.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3. 9.

• 마감일자 : 2018. 4. 18.

- 생태면적률 제도,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의무화,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시행근거 마련 및 자연환경 해설사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100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생태면적률 산정방법 등 제도기반 마련(안 제2조의2)

- 1) 개발대상지역의 생태적 또는 자연순환 기능의 향상을 위해 생태면적률의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고,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생태면적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나.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 및 활용대상 구체화(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 1)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의무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지도는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미제출 하거나 부실작성 시에는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2) 도시생태현황지도는 토지이용현황, 토지피복현황, 지형, 식생현황 및 동식물상 등의 주제도와 비오톱유형도, 비오톱평가도를 작성하도록 함
- 3)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지자체장이 수립하는 도시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지도를 활용하여야 할 대상계획을 명시하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함

다.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수립 등 시행절차 마련(안 제27조의2, 제27조의3)

- 1) 도시내 공원이나 녹지의 생물다양성 증진 등 생태적 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도시생태 복원사업 대상지역으로 추가함

- 2) 지자체가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 수립시 지역주민, 환경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수립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 3)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복원방법, 시행절차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라. 자연환경해설사 교육 및 양성기관 지정(안 제41조의2, 제41조의3)
- 1) 자연환경해설사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3년마다 보수교육 이수, 양성기관 재지정 신청시 첨부서류 구체화 등 고시로 운영중인 사항을 시행규칙에 상향하여 규정함
 - 2) 보수교육의 교육과목별 교육시간을 정함(안 별표2의2)
- 마. 생태계보전협력금 교부 및 반환제도 정비
- 1) 지자체에 교부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교부금의 적정용도 사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교부금 집행내역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토록 함(안 제34조의2)
 -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로 인·허가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 인허가일을 기준으로 부과기관에 통보토록 함(안 제35조)
 - 3)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승인 신청시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을 추가 하고, 사업완료후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신청시 관할 지자체와의 인계·인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효과적 시행 및 유지관리를 강화함(안 제36조)
- 바. 기타 별지서식 등 정비
- 1)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관리대장의 주민번호 입력란을 생년월일로 수정(안 별지 제7호)
 - 2) 생태계보전협력금 환급신청서의 구좌번호를 계좌번호로 수정(안 별지 제10호)
 - 3) 생태계보전협력의 부과·징수실적 보고서식에 납부연월일을 추가(안 별지 제20호 서식)
 - 4) 기타 용어 및 서식정비(안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6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3. 9.

• 마감일자 : 2018. 4. 18.

-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의무화,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시행근거 마련 등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100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별도관리지역에 도시의 녹지보전을 위한 지역을 추가(안 제25조)

- 1) 국토의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을 생태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1··등급, 별도관리지역)한 생태·자연도를 작성하고 있음
- 2) 이중 별도관리지역은 다른 법률에 의해 보전되는 지역중 역사적·문화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과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해 관리되고 있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의 녹지보전과 관련된 지역은 현재 규정하고 있지 않음
- 3) 이에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해 지정·관리되고 있는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별도관리지역에 추가하여 작성하도록 함

나.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감면대상 추가(안 제39조, 별표2의2)

- 1)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자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하고 있으나 생태계의 보전이나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될 경우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부과되어 부담금 제도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2) 이에 법령에 근거한 생태계의 보전·복원 목적의 사업은 생태계 보전협력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생태계 보전·복원사업 지원 및 확산을 유도함

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방법 다양화(안 제39조의2)

1) 「부담금관리기본법」이 개정(2017. 12. 30)되어 부담금을 신용·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개별법령에 납부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현재 현금과 지로로만 납부할 수 있던 것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편의를 도모함

라.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절차 개선(안 제46조)

1)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생태계 복원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납부한 금액의 일부를 반환해 주고 있음

2) 그러나 승인받은 사업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료한 후에 반환해주고 있어 납부자 및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초기 공사비 조달 및 복원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어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을 착수하는 경우, 승인받은 사업비의 일부(50% 이내)를 미리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마. 기타 제도 개선(안 별표 3, 별표 4의3 및 별표 8)

1)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금지 및 고시에 관한 업무를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으로 위임(안 제52조)

2) 지자체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의무화에 따라 지도작성 검증 등 관리업무를 국립생태원에 위탁(안 제52조의2)

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2012. 2. 1)에 따라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52조제2항제7호, 제53조의2제4호)

4) 타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및 용어 등 수정(별표2, 별표3)

62.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8. 3. 9.

● 마감일자 : 2018. 3. 14.

○ 해양관광·레저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내 분산되어 있는 크루즈산업 육성, 마리나항만개발 등 해양관광 기반업무를 해양레저관광과장 분장사무로 조정하고, 수산분야 자연재해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소득복지과장이 분장하는 재해대응 업무를 어촌양식정책과장이

분장하도록 조정하고, 소득복지과장이 분장하는 귀어·귀어촌 업무를 어촌관광 및 개발사업과의 연계를 위하여 어촌어항과장이 분장하도록 조정하며, 항만기술안전과장이 분장하는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항만개발과장이 분장하도록 조정하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장이 분장하는 국가관리무역항 시설공사 업무를 항만개발과장이 분장하도록 조정하며, 해양생태계 및 해양보호구역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의 분장 사무로 구체화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에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이행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선박평형수관리협약 이행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한국형 e-Navigation 도입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해적 피해예방대책 추진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항만건설작업선 안전 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정보보안 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수산물 검역 강화에 위하여 필요한 인력 11명(6급 3명, 7급 4명, 8급 3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해양조사원에 해안침수예상도 고도화 및 연안 재해 실시간 평가체계 구축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어업관리단에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 공동단속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8급 2명) 및 어업지도선 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인력 7명(5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해양수산청에 항만순찰선 대체 건조에 따라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진도해역 조류신호표지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3명),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8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해양안전심판원에 해양사고 특별조사 업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시행)되고, 국립수산물과학원에 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수산방역 및 예찰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책임운영기관 성과관리 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책임운영기관 성과관리

63.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6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
안전처)

- 63 -

심사·인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마약류취급자 교육내용에 전산 보고방법을 포함시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최근의 약사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마약류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고 자진회수 시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민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16조)

- 1) 「민법」 개정으로 “무능력자” 대신 “제한능력자”로 용어를 변경토록 함에 따라 해당 용어를 교체하고자 함

나.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업무범위 등 추가(안 제22조의2)

- 1)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18. 5. 18~) 이후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웹보고 하여야 하나, 보고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보고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통한 연계 보고를 추진하고 있음
- 2) 보고자의 소프트웨어를 통한 연계보고 시 시스템 문제 등으로 보고 오류 등이 발생하는 경우 보고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기능 적합성 검증이 필요함
- 3) 이에 외부 소프트웨어의 기능 적합성 심사·인증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에 추가하고 관련 절차·기준·방법을 식약처장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용기 등 기재사항 명확화(안 제30조)

- 1) 현행 마약류 용기 등 기재사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의약품등 안전에 관한 규칙」만 준용토록 하고 있어 용법·용량 등 약사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토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용기 등에 표시기재를 하여야 하는 의무대상자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표준품·시약 등 품목허가 대상이 아닌 마약·향정신성의약품도 허가받은 품목에 준하는 기재사항을 표시토록 하고 있음
- 2) 이에 「약사법」의 표시기재 의무사항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용기 등에 표시기재를 하여야 하는

의무대상자를 규정하는 한편, 표준품·시약 등 품목허가 대상이 아닌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기재사항 항목을 구분하여 명시함으로써 표준품·시약 등의 표시기재를 간소화하려는 것

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에 따른 교육내용 등 변경(안 제47조)

1)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18. 5. 18~)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내용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보고방법을 추가하고 관련 교육의 협조기관으로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를 규정하고자 함

마. 의료용 마약류 자진회수 시 행정 처분 감면조항 신설(안 별표2)

1) 위해 우려 의료용 마약류로 인한 국민보건 상 위해 요소 예방 및 자진회수 권장을 위하여 회수 의무자가 「약사법」에 따라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약사법」과 동일하게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65.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3. 9.

● 마감일자 : 2018. 3. 14.

○ 특허청에 특허 및 상표·디자인 심사품질 향상을 위한 심사인력 28명(6급 28명), 국민의 재산권 침해 예방을 위한 상품 형태 모방행위 단속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및 정보보안 관제센터 전담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특허청 소속기관에 특허심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심판관 1명(4·5급 1명)과 국가자격증(변리사) 취득을 위한 교육운영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도 개선에 따라 총액인건비 활용을 통해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조정하고, 기획조정관의 분장사무 중 정부3.0을

정부혁신으로 조정하며,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하여 대변인 보임 규정을 4급에서 3·4급으로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과 관련 규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심판관 보임규정을 직제와 일치하게 정비하며, 본부와 소속기관간 상호이체가 가능한 정원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66.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8. 3. 9.
 - 마감일자 : 2018. 3. 13.
- 산림청에 정보보안 전담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 불법목재 교역제한 제도 운영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무궁화 보급 확대 및 산업화를 위한 인력 1명(6급 1명), 나무의사제도 운영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산림항공본부에 산불진화 전문인력 24명(6급 3명, 7급 5명, 8급 7명, 9급 9명)을 증원하며, 지방산림청에 드론 운영 인력 2명(7급 2명), 대북지원 양묘장 시설 관리 인력 1명(7급 1명), 불법 산림훼손 단속 인력 5명(6급 1명, 7급 1명, 8급 3명)을 각각 증원하고, 도시숲과 정원(庭園) 사무를 통합하여 도심 내 그린인프라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림보호국의 정원 조성 및 관리 기능을 산림복지국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시행)되고, 국립산림과학원에 기후변화 대응 인력 1명(연구사 1명), 생활권 수목진료 연구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수목원에 유용식물 증식 연구 인력 1명(연구사 1명), 성과 관리 강화를 위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에 국립숲속야영장 관리 인력 1명(7급 1명), 시설물 안전관리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정원의 직급별 인력을 반영하고, 산불·산사태 등 산림 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재해안전과의 국유재산관리 기능을 기획운영팀으로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6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3. 9.
- 마감일자 : 2018. 4. 18.
- 건강보험료 부과에 정확성을 제고하고,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공단이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주택 등록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제공 요청 자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자료 및 임대주택 관련 통계자료를 추가(안 별표 4의3)

6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3. 9.
- 마감일자 : 2018. 4. 4.
- 환자의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349호, 2018. 1. 16. 공포, 2018. 7. 1 시행)되고 건강보험 과징금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348호, 2018. 1. 16. 공포, 2018. 7. 1시행)됨에 따라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 규모를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에 과징금 수입의 100분의 15를 사용하도록 용도 및 지원 규모를 신설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 지원에 과징금 수입의 100분의 35를 사용하도록 지원 규모를 조정(안 제71조제1항)

69.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3. 9.

• 마감일자 : 2018. 3. 22.

- 실종아동등의 실종 장기화 방지 및 조기 발견 체계 구축을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이 인터넷주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관련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을 위한 지문등정보 사전등록 신청서는 정보 등록 후 즉시 파기하도록 하는 등 내용으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924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지문 등 사전등록 신청서 파기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3조의2 제2항 신설)
 - 경찰관서의 장이 지문등 사전등록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지문등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후에는 해당 신청서를 지체 없이 파쇄 또는 소각하고, 그 파기 사항 및 등록정보 확인 방법을 등록 신청 보호자에게 정보 등록 전에 알려주도록 함
- 나. 경찰관서의 장이 개인위치정보등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규정(안 제4조의3 신설)
 - 경찰관서의 장이 개인위치정보등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등 해당 사업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함
- 다. 개인위치정보등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보완(안 제4조의4 제1항 내지 제4항)
 - 경찰관서의 장이 개인위치정보 외에 인터넷주소 ·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관련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당 정보 제공 요청을 위해 실종아동등 보호자에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는 등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보완함

- 라. 개인위치정보등 파기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4조의4 제5항 신설, 제6항)
- 경찰관서의 장이 관련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그 외 필요한 파기 방법 및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7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3. 9.
- 마감일자 : 2018. 4. 18.
- 본인확인기관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신원확인 및 법정대리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자료의 확인을 국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가. 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자료 확인 요청 근거 신설(안 제9조의7 신설)
 -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신원확인 및 법정대리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의 확인을 국가 등에 요청 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 만 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정보통신망법 제31조)함에 따라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해 법정대리인을 확인

71.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

- 예고일자 : 2018. 3. 9.
- 마감일자 : 2018. 3. 13.
- 2018년도 소요정원 반영을 내용으로 하는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는 내용 등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72.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73.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원회)

- 70 -

합리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투자자문 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확대(안 제2-9조제4항)

- 가장 낮은 수준의 자기자본으로 등록이 가능한 투자자문업자의 경우에도 파생결합사채에 대해 투자자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나. 외국환업무 등록 자기자본 요건 완화(안 제2-11조제1항제1호가목)

-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최소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함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 등록을 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최소 자기자본요건도 현행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함.

다. 계열사 집합투자기구 판매규제 강화(안 제4-20조제1항제10호마목, 부칙 제2조)

- 투자매매·중개업자의 연간 집합투자증권 판매금액 중 계열 집합 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금액 비중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5로 축소하되, 시장 부담 등을 감안 하여 연간 100분의 5씩 단계적으로 축소하려는 것임

라. 월간 매매내역 통지의 편의성·실효성 강화(안 제4-37조제2항)

- 투자매매·중개업자가 매월 집합투자증권의 실질 투자수익률, 환매 예상금액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마. 의결권을 위임받을 수 있는 투자일임업자의 요건(안 제4-75조의2)

-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원칙·세부기준, 담당조직 및 조직체계, 이해상충 방지 정책 등을 금융 투자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한 투자일임업자에 한해 연기금 및 공제 등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바.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허용(안 제4-77조제18호 다목·라목)

- 투자일임업자가 영상통화를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비대면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기자본 요건 40억원 이상인 투자일임업자가 (주)코스콤 홈페이지에 최근 2년 이상 투자자가 알아야 할 주요사항을 매일 공시하고 있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영상통화를 통한 설

명 의무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비대면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7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3. 9.

• 마감일자 : 2018. 4. 18.

○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수익률을 제고하고 비용은 절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 기구는 자율성을 보다 제고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투자자문·일임업자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중 부실업자의 경우 신속히 퇴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 가능 업종 확대(안 제14조의5제1항)

- 온라인소액투자중개가 가능한 업종을 현행 중소기업창업법 지원법 시행령을 인용하는 방식에서 이 법에 직접 규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일반 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함.

나. 투자자문·일임업자의 등록유지 요건 강화(안 제23조제1호)

-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에 대해 최소자기자본 유지요건 위반의 판단주기를 현행 매 회계연도말에서 매 월말로 단축하고, 최저자기자본 요건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도 1년이 아닌 6개월로 축소함.

다. 국공채에 대한 분산투자규제 완화(안 제80조제1항제3호의2)

-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에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투자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른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에 그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의 100분의 5 이하씩 분산투자 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채 등의 경우 100분의 30, 지방·특수채 등의 경우 100분의 10 이하씩 투자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함.

라.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위임행사 허용(안 제99조제2항제5호자목)

- 투자일임업자가 연기금 또는 공제 등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계열회사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및 의결권 교차행사 등은 금지함.

마. 투자일임보고서 교부 방식 다양화(안 제100조제2항)

-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일임보고서 교부방식을 전자우편 이외에도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화함.

바. 온라인소액투자중개 투자한도 규제완화 대상 확대(제118조의17제3항)

- 일반투자자에 비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투자한도를 높게 적용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의 범위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의 모집에 최근 2년간 5회 이상 투자하고, 최근 2년간 누적 투자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사람을 추가함.

사.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최소자기자본 요건 완화(안 제271조의2제3항)

- 주로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함.

아.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등록유지 요건 강화(안 제271조의3제1호)

-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해 최소자기자본 유지요건 위반의 판단 주기를 현행 매 회계연도말에서 매 월말로 단축하고, 최저자기자본 요건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도 1년이 아닌 6개월로 축소함.

7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3. 9.

● 마감일자 : 2018. 4. 18.

-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수익률을 제고하고 비용은 절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 기구는 자율성을 보다 제고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현장 밀착형 제도 개선 차원에서 투자일임업자 및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징구주기 완화(안 제63조제1항)

- 투자권유자문인력 중 직무수행 과정에서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기계산으로 거래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는 주기를 현행 분기별에서 연별로 완화함.

나.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주기 완화(안 제88조제1항)

-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주기를 현행 3개월 1회 이상에서 6개월에 1회 이상으로 완화함

다. 투자운용인력의 운용성과 및 보상체계에 대한 공시(안 제91조제4항)

- 집합투자재산의 투자운용인력의 운용성과 및 보상체계 등을 공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라. 투자일임보고서 미교부의 예외 마련(안 제99조제1항)

- 투자자가 투자일임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마련함.

마.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범위 확대(안 제249조의12제1항)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전환우선주, 전환상환우선주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가 금지되는 증권의 범위를 현행 지분증권 전체에서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으로 축소함.

바.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운용 허용(안 제249조의 23제1항·제5항)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투자회사도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운용을 허용하고,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운용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각각 보고하도록 규정함.

사.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등록 시 당연취소 사유로 규정(안 제253조제1항, 제282조제1항)

- 현재 하위법령을 통해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되거나 해산된 경우 등록취소 사유로 한 것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 경우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집합투자기구 또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변경 등록한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함.

7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3. 9.

• 마감일자 : 2018. 3. 21.

-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 에 따라 사업자의 등록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세무서 등록절차와 연계하고, 임대등록 시스템 구축과 병행하여 민원 서식도 개정하여 사업자의 등록 편의성과 대장관리 용이성 ·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 주요내용

- 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는 경우, 이를 관할 세무서로 이송(안 제2조)
 - 민간임대법 신청서에 부가세법 신청서 작성을 위한 기재사항을 작성하도록 하고, 민간임대등록증 발부 후 신청서를 세무서에 이송하도록 함.
- 나. 등록신청서, 사업자 등록대장 등의 서식 개선(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 등록신청서, 사업자 등록대장 등에 사업자, 등록주택 명세를 정확히 기입할 수 있도록, 기재항목을 변경함. 세제혜택을 위한 증빙시 사업자 식별이 가능하도록 생년월일이 아닌 주민등록번호 기입하고, 법인·개인 여부, 기업형·단기·준공공 구분, 건설·매입 여부 등의 작성을 용이하도록하여 오기를 방지함.

77.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청)

• 예고일자 : 2018. 3. 9.

• 마감일자 : 2018. 3. 14.

-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 은평세무서를, 중부지방국세청에 기흥세무서를, 대구지방국세청에 수성세무서를, 부산지방국세청에 양산세무서를 각각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4급 4명, 5급 16명)을 증원하며, 국세청에 상호합의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6급 3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국세청에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시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상장주식 관련 자본거래 분석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정보보안 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세무관서에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시행에 필요한 인력 105명(6급 6명, 7급 27명, 8급 38명, 9급 34명), 근로·자녀장려세제 집행에 필요한 인력 96명(6급 20명, 7급 21명, 8급 29명, 9급 26명), 국민참여 탈세제보 처리에 필요한 인력 16명(6급 3명, 7급 4명, 8급 5명, 9급 4명)을 각각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시행)되고, 국세상담센터 책임운영기관 성과관리 전담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기관 및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며,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소관 업무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소득 지원과를 장려세제운영과로, 소득관리과를 장려세제신청과로 명칭 변경하고, 민관협업 업무 총괄부서를 지정하며, 국세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밀양지서장을 복수직 서기관(4·5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 등 사유로 결원 중인 지방세무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1명(9급 11명)을 행정직군 정원 10명(9급 10명)과 기술직군 정원 1명

(9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78.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8. 3. 9.
 - 마감일자 : 2018. 3. 14.
- 보상 관련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국가유공자에게 민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 소속기관 인력 17명(9급 17명)을 증원하며,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 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총액 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며,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소속기관 보훈심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임기제 공무원 정원 8급 1명을 2명으로 조정하고 존속기간을 2021년 2월 28일까지로 하며, 국가보훈처 인력 재배치 기본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간 재배치를 실시하며, 소속기관 인력 재배치 조정과 주요 정책 추진 등을 위한 직무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79.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8. 3. 9.
 - 마감일자 : 2018. 3. 14.
- 교육부에 장애인평생교육 강화, 학생평가제도 개선, 한국형 나노디그리 운영, 정보보안 관제센터 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교육연구사 1명),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에 장애인평생교육 진흥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전담

기구 설치에 따른 운영 인력 6명(장학관 1명, 교육연구관 1명, 교육연구사 2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에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교육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고, 교육부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80.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

- 예고일자 : 2018. 3. 9.
 - 마감일자 : 2018. 3. 14.
- 2018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인천세관 특송통관국 및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한시정원 11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4명, 8급 4명)을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며, 제주세관에 두는 휴대품과의 존속기한을 2018년 3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인천세관에 2020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인천항통관지원2과를 신설하여 증가하는 수출입물동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인천세관에 국세채납자에 대한 채납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10명(6급 3명, 7급 5명, 8급 2명)을 증원하며, 인천세관에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중앙관세분석소에 FTA 확대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 분석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서울세관에 원산지 둔갑 등 불량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단계 원산지 표시 단속을 위해 필요한 인력 3명(7급 2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세관관서의 공항만 통관감시 분야 교대근무 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력 62명(6급 6명, 7급 17명, 8급 14명, 9급 5명, 전문경력관 20명)을 증원하며, 세관관서의 수입물품 현장검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52명(6급 9명, 7급 20명, 8급 14명, 9급 9명)을 증원하고, 세관관서의 수입물품의 사후심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32명(6급 4명, 7급 10명, 8급 10명, 9급 8명)을 증원하며, 김해공항세관에 김해공항의 여행자 증가에 따른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9명(6급 1명, 7급 4명, 8급 5명, 9급 4명, 전문경력관 5명)을 증원하고, 평택세관에 FTA 확대에 따른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 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3. . 공포·시행)되고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공항만 확대 등에 따른 탐지견 수요 증가에 대응한 탐지견 훈련교관 및 견사 위생관리에 필요한 인력 3명(위생 9급 1명, 전문경력관 2명)과 책임운영기관의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3. . 공포·시행)됨에 따라 정규조직으로 전환되는 조직과 그 인력 및 제주세관 휴대품과의 존속기한 연장을 반영하는 한편, 증원되는 인력 등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며,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의 책임운영기관 전환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기관간 업무협의를 위해 행정과장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고, 관세청 정보개발팀의 업무분장 조정 및 일부 세관 관서의 위치 오류 수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8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3. 12.
- 마감일자 : 2018. 3. 16.
- 다양화되는 개인정보침해에 대응하여 기술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정책관을 정보기반보호정책관으로 개편하고,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2018.1.18. 시행)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 및 관리 기능이 국토교통부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인력 1명(6급 1명)을 국토교통부로 이체하는 내용 등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과학수사 감정역량 강화 등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 및 하부 기구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82.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통상부)

- 예고일자 : 2018. 3. 12.
- 마감일자 : 2018. 3. 16.
- 외교문서 공개제도 운영 관련 업무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학예연구사 1명), 긴급여권 발급 등 영사민원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6등급 1명, 3·4등급 1명), 사이버위협 예방활동·침해사고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각 재외공관에서 사건·사고를 전담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39명(일반임기제 3·4등급 39명), 한·중관계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한시 인력 1명(5·6등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던 성과

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 예정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신설·개편되는 조직의 분장사무를 정하며 일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83.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8. 3. 12.
 - 마감일자 : 2018. 3. 16.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보보안 관제센터 운영, 위생용품 안전관리, 국가 필수약품 공급, 화장품 및 의료기기 안전관리 전담인력 9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8급 2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위생용품 위해평가 및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 전담인력 5명(연구관 1명, 연구사 4명)을 증원하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식품 및 위생용품 안전관리 전담인력 47명(5급 1명, 6급 2명, 7급 8명, 8급 8명, 9급 10명, 연구사 18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8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3. 12.
- 마감일자 : 2018. 4. 23.
- 수급자의 불편, 새로운 제도 적응 준비 기간 등을 고려, 既설치 기관에 대해서는 단기보호 급여기간 별도 설정토록 조항 정비
- 주요내용
 - 가. 단기보호 급여기간 조항 정비(안 제11조제2항 신설)
 - 既설치기관에 대하여 급여기간 별도 설정

8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3. 12.
- 마감일자 : 2018. 4. 23.
- 환경관리비의 원활한 정산을 위한 근거가 되는 사용계획서의 제출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서 제출시기를 구체화(안 제61조제2항)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을 환경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의 시설을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 나.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명확화(안 제61조제3항 별표8)
 - 환경보전비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병행하여 계상하고, 폐기물처리비를 건설공사현장에서 폐기물을 분리·선별, 운반 또는 상차하는 비용도 포함
 - 다. 환경관리비 ‘산출기준’과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규정하여 고시(안 제61조제4항)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함

86.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3. 12. • 마감일자 : 2018. 4. 23.
- 도로법 제62조제1항의 개정으로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안전시설의 종류를 구체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도로점용물 관련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해야 하는 안전시설의 종류 구체화(안 제58조제2항제4호 신설)
 - 도로법 제50조에 따른 기준(‘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보행시설물과 도로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함

87.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8. 3. 12. • 마감일자 : 2018. 4. 23.
- 국공립대학 교원의 전문성을 반영하여 기업체가 합리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한 사외이사 겸직 제도의 취지에 맞게, 대학교원이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해당 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일체를 대학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개선
⇒ 교육공무원법 개정(‘17.11.28. 공포)에 따라 하위 법령 정비
- 주요내용
 - 가.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원은 해당 기업체에서 지급하는 연간(월별, 내역별 구분) 보수 일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대학의 장에게 제출(안 제7조의5제2항 개정)

88. 원자력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8. 3. 12. • 마감일자 : 2018. 4. 23.
- 원자력진흥법에서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장의 기술료 징수·면제 보고 의무 및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분기별 전력량 자료 제출의무와 위반 시 제재 한도를 규정하고 하위법령에서 제재기준을

구체화 하도록 위임규정이 있으나, 하위법령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정을 추진하여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함.

○ 주요내용

- 가.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장의 기술료 징수·면제 보고 의무 및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분기별 전력량 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제25조)
- 나.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장의 기술료 징수·면제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차 위반시에는 2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분기별 전력량 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5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8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 예고일자 : 2018. 3. 13.
- 마감일자 : 2018. 4. 24.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비영리법인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레미콘 · 아스콘 납품시, 복수조합에 대한 시장 점유율 제한 규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 복수 조합의 시장점유율이 80% 초과시, 해당 조합들의 시장참여를 제한 또한, 판로지원법 개정으로 인해 하위 규정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

○ 주요내용

- 가. 간주 중소기업의 소기업 우선조달제도 참여 허용* (시행령 제2조의2)
 -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비영리법인·단체들도 규모가 영세한 경우에는 소기업 우선조달제도 참여대상에 포함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실적 제출 의무대상 추가* (시행령 제3조)
 - 판로지원법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의료원 등이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제출 기관에 해당

기관을 포함

다.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실적 제출 의무 명시 (시행령 제5조)

- 중소기업제품 등과 달리 장애인기업 제품은 구매계획 및 실적 제출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구매 계획 및 실적 제출 대상 범위에 장애인기업제품을 포함

* (기존) 중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 (추가) 장애인기업제품

라. 레미콘·아스콘 입찰방식 개선 및 복수 조합의 시장점유율 제한 규정 삭제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3조)

- 레미콘, 아스콘 시장 규제 방법을 복수 조합의 시장점유율을 80%로 제한 방식에서 조달청이 조합의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추진

마. 법률 개정 등에 따른 조문 체계 정비(시행령 제2조 및 제5조의2,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제4조)

- 인용조문 오류 수정 등 조문체계 정비

9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 예고일자 : 2018. 3. 13.

● 마감일자 : 2018. 4. 23.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비영리법인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레미콘·아스콘 납품시, 복수조합에 대한 시장점유율 제한 규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복수 조합의 시장점유율이 80% 초과시, 해당 조합들의 시장참여를 제한 또한, 판로지원법 개정으로 인해 하위 규정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

○ 주요내용

가. 레미콘·아스콘 입찰방식 개선 및 복수 조합의 시장점유율 제한 규정 삭제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3조)

- 레미콘, 아스콘 시장 규제 방법을 복수 조합의 시장점유율을

80%로 제한 방식에서 조달청이 조합의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추진

나. 법률 개정 등에 따른 조문 체계 정비(시행령 제2조 및 제5조의2,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제4조)

- 인용조문 오류 수정 등 조문체계 정비

9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3. 13.

● 마감일자 : 2018. 4. 23.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하여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에너지중점산업·에너지특화기업·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5180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 계획의 변경 요청,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해제 요청 등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변경 요청(안 제2조)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시·도지사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와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도면 등의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시·도지사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해제 요청(안 제3조)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해제를 요청하려는 시·도지사는 해당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과 해제요청 사유를 기재한 서류, 지정 해제 후 예상문제에 대한 처리계획 서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9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8. 3. 13.

• 마감일자 : 2018. 4. 23.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하여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에너지중점산업·에너지특화기업·전문연구 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5180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됨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기본계획·조성계획의 내용 및 절차, 에너지중점산업·에너지특화기업·전문연구기관의 대상, 요건,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지원(안 제12조)

-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에너지산업등 관련 연구·개발시설, 연구·개발제품의 인증·평가·실증 시설, 기업지원시설, 교육·훈련시설 등으로 정하고, 기반시설에 대해서 금융 및 재정지원, 사업화 지원, 창업·판매·수출 활동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함

나.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대상 및 절차(안 제13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중점산업을 지정할 때에는 성장잠재력, 시장성, 경제적 파급효과, 해당 지역산업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시·도지사, 전문가, 단체 등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정함

다.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요건 및 지원(안 제14조 ~ 제15조)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에너지산업등의 제품·서비스 매출액 비중이 50%이상인 기업이어야 하며, 에너지산업등 관련 특허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우수 숙련기술자의 비율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정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자 등에게 에너지특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함
라.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요건 등(안 제16조)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에너지산업등 관련 연구개발 실적, 연구인력·시설·장비 및 정보 등 연구기반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하도록 정함
-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특별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의 에너지산업등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 실증사업, 시장 및 기술 조사·분석,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발굴의 지원에 관한 사업 등에 소요 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마.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안 제18조 ~ 제19조)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적절한 교육과정 및 내용, 교육시설, 전문교수요원의 확보 등을 고려하도록 정함
-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특별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함
-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강의료와 수당,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등의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93.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8. 3. 13.
- 마감일자 : 2018. 4. 23.

○ 현재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에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5·18민주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에 근거하여 대통령명의 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증서 발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하였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최대한의 예우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적을 상실한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에게도 대통령명의 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적상실자에 대한 대통령명의 증서 발급 근거조항 신설(안 제21조의2 제2항)

- 1)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희생과 공훈을 인정하는 내용의 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94.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3. 14.
- 마감일자 : 2018. 4. 23.

-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과 관련하여 수시검사 시행, 미인증 제품의 수거명령 등에 대한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5193호, 2017.12.12. 일부개정, 2018.6.13. 시행)됨에 따라 수시검사 및 수거명령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기존 인증제도 운영에 있어 부족하였던 검사기관 재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시행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타 법률에 따른 조문 번호 수정(안 제3조)

- 타 법률 조항 변경에 따른 조문 번호 수정 조치

나. 조문삭제(안 제7조)

-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받은 제품(수도미터)의 제품 시험을 본 규칙에 따라 시행토록 부처 협의가 됨에 따라 조문 삭제

다.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인증제품 정보게시 사항(안 제8조)

-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수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을 판매·판매중개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인증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라. 인증기업 대상 수시검사 시 필요한 요구자료 사항(안 제11조)

- 지속적인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상시확인하기 위해 도입하는 수시 검사업무 수행 시 인증기업에 요구하는 자료항목 규정

마. 정기검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 시 인증신청 반려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의3)

- 정기검사 만료일 전까지 정기검사를 신청할 경우 인증이 유지되는 점을 악용하여 고의로 정기검사를 기피 하는 경우가 있어, 천재 지변, 사고 등의 불가항력적 사안 없이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인증 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

바. 수시검사의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11조의4)

- 수시검사 도입에 따른 수시검사 방법 및 기준을 규정

사. 검사기관 재지정 주기에 관한 사항 등(안 제16조)

-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4가 삭제됨에 따라 현행 규칙 내 관련 내용을 삭제 하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문구 수정·반영(KS Q ISO/IEC 17025) 또한, 현행 검사기관에 대한 재지정 주기가 없어 2년 주기로 재지정 함을 규정

아. 검사기관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의1)

- 검사기관 지정 이후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이 없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기관지정 등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

자. 인증표시 방법에 관한 사항(안 별표3)

- ‘인증표시 마크’의 의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용어 분리·수정(인증표시, 인증마크) 및 인증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95.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3. 14.
- 마감일자 : 2018. 4. 23.

○ 기존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이 하여야 하는 소독 등 위생조치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그 해석이 일부 불분명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저수조청소업자의 변경신고사항에 청소 감독원을 포함하며, 급수관 상태검사에 대한 검사 주기를 명확히 하고, 급수관 상태검사 결과를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여 수도물의 불신을 해소하고자 함. 한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자격시험의 운영과 관련하여 응시 수수료 환불규정 상의 불명확성 해소, 시험 공고방법의 개선 등 기존 시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공고 방법 변경 및 응시수수료 환불규정 명확화(안 제14조)

-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의무화되어있는 것을 폐지하며, 응시 수수료 환불 규정의 환불기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함.

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교부업무 수행주체 변경(안 제15조)

- 기존 환경부장관이 하던 것을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장이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함.

다. 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저수조 청소 이후 수질검사 실시 의무화 및 방법 명확화 등 (안 제22조의3)

- 저수조 청소 전·후에 잔류염소, 탁도, pH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연 1회 이상의 수질검사결과가 법에 위배한 경우, 원인규명 및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수도사업자에게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3년 이상 보존하도록 함.

라. 급수관 상태검사 주기 명확화 및 검사결과 고지 (안 제23조)

- 급수관 상태검사는 준공 후 5년이 된 해에 실시하고, 그후 2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이 당초 법의취지로 해당 문구를 명확히 하고, 급수관 상태검사(일반, 전문)결과를 수도사업자에게 보고하고 해당 건축물 거주민에게 고지하여 수도물 불신 해소를 하도록 함. 급수관 상태검사에 대한 검사기준중 납(Pb)의 농도가 먹는물 수질

기준 변경에 따라가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치를 개정함.
마. 저수조청소업의 청소감독원의 변경이 있을 시 이를 신고사항에 포함함. (안 제23조의2)

96.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3. 14.
 - 마감일자 : 2018. 4. 23.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법률 제15193호, 2017.12.12 공포, 2018.06.13 시행)됨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은 수거 권고 없이 바로 수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품 수거 권고 및 명령의 이행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수거 권고 및 명령에 불복할 경우 해제신청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과태료가 신설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해 부과주체를 명확히 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수립하는 등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였음.
- 상수원보호구역이 자전거·레저 특구로 지정되는 경우 관광객 등의 방문이 증가함에도 식음료 판매시설이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하는 야외 취사행위에서 소·경형 화물자동차 등에 의한 음식판매 또는 취사행위를 제외하여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소독 등 위생조치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및 저수조 청소업자는 교육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1회성 교육으로 평생 유효하여 시대적 변화에 따른 수도시설 교육을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재교육을 도입하려는 것임.
- 이와 함께 유치원은 기본적인 교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초등, 중등, 고등학교와 달리 수도요금 감면대상 교육시설에 제외하고 있어 교육시설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이를 추가하고자 함. 수도시설 개량에 대한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의 기술적인 적정성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현재 상하수도협회에서 정수시설운영 관리자 자격증 교부 업무를 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부재하여 이에 동 업무를 상하수도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야외 취사행위에서 소규모 화물트럭 등에 의한 취사행위는 제외(안 제12조제1항의 3호 개정)
- 나. 제품 수거 및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불복하는 경우 권고 등의 해제 신청 절차 신설(안 제24조의9 신설)
- 다. 제품 수거 및 명령을 위한 현장조사 내용 신설(안 제24조의10 신설)
- 라. 저수조청소업자의 교육주기 도입(안 제52조의 2항 1호)
- 마. 수도요금 감면대상 교육시설에 유치원 추가 반영(현행 제53조의2 개정)
- 바. 수도시설 국고보조사업 기술검토의뢰를 위한 근거 마련(제66조의2 신설)
- 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교부업무 위탁근거 마련(제67조제4항 신설)
- 아. 현장조사 및 제품 수거 권고 및 명령 해제업무 위임(안 제67조제1항제4, 5호 신설) 및 한국상하수도협회 위탁업무의 구체화 신설(안 제67조제4항 신설)
- 자.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부과주체 위임 신설(안 제69조제1항, 2항, 3항 신설)
 - 과태료는 환경부 장관 및 시·도지사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제87조제1항제2호, 제87조제2항제2호, 3호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수립하였음.

97.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3. 14. ● 마감일자 : 2018. 3. 19.

- 자치분권 추진체계 개편 등을 위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구성,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20조의2)
 -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사전에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자치분권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

나. 자치분권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안 제23조제3항)

- 자치분권기획단 단장을 파견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보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의 자치분권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겸임하여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9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 예고일자 : 2018. 3. 14
- 마감일자 : 2018. 4. 23.
- 지난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 대책’의 후속조치로,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23개에서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2017년 7월 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에 해당)을 제외한 나머지 18개 업종을 모두 삭제함(별표 1)

9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3. 14.
- 마감일자 : 2018. 4. 23.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17.12.19) 및 시행(‘18.6.20)이 예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수집·분석 및 관리해야 하는 정보 항목으로 기상자료, 사회지리정보, 원자력시설 상태정보, 환경방사선 감시 및 방사능 분석 결과를 시행규칙에

규정(안 제16조의2제1항 신설)

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제출 의무 부여(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100.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3. 14.

● 마감일자 : 2018. 4. 24.

○ 항공사의 이용자 편의 증진 유도를 위한 국토교통부 항공서비스 평가 결과 및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사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노력을 운수권 배분 평가에 반영하기 위함임. 또한 국가간 교류협력 촉진, 기업의 사회적 기여 및 사회적 책임이행 등 항공사의 공공성 제고 노력을 운수권 배분 평가지표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 항공서비스 평가 결과를 운수권 배분 평가지표에 반영(안 별표2호다목)

나. 항공사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기여도를 운수권 배분 평가지표에 반영(안 별표3호다목 신설)

다. 국가간 교류협력 촉진, 기업의 사회적 기여 및 사회적 책임이행 노력 등을 운수권 배분 평가지표에 반영(안 별표4호나목 신설)

101.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3. 14.

● 마감일자 : 2018. 4. 24.

○ 항공시장 확대에 따라 조종사, 승무원 등 전문인력 부족이 우려되고, 항공사간 인력 영입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신규 항공사 진입이 전문인력 수급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함임. 항공당국이 면허기준 준수여부 확인 및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항공사에 요구 가능한 자료 범위를 확대하고, 정기·수시 제출하도록 하여 경영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임. 또한 항공교통안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재무구조 개선명령 조건을 강화하여 항공사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항공운송사

업자 면허신청시 면밀한 기준 요건 검토를 위하여 면허심사 처리기한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으로 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 등 인력확보 계획의 적정성과 노선계획의 타당성 추가(안 제8조 제11항 신설)
- 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사에 요구 가능한 경영 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분기별 제출 의무화(안 제11조제3호 개정, 안 제11조제4호 신설)
- 다. 항공사업법 제27조제8호의 재무구조 개선명령 요건인 자본잠식 기준을 “3년이상 지속” 에서 “1년 이상 지속” 으로 강화(안 제30조제1호)
- 라. 별지 제1호서식에 표시된 처리기한을 “25일” 에서 “90일” 로 연장(안 별지 제1호서식)

102.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3. 14.
- 마감일자 : 2018. 4. 24.

- 항공기 운항시각(이하 슬롯이라 한다)의 배분·운영 등에 대한 공정성 강화를 위해 배분·조정·회수, 슬롯 상호교환 시 인가 주체를 변경하고, 신규 항공사가 되기 위한 면허기준을 현실화하여 안전,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 안전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슬롯 배분·조정·회수, 슬롯 상호교환 시 인가 주체를 기존 서울지방항공청과 공항공사·항공사 일부 파견조직에서 국토교통부(정책결정)와 한국·인천공항공사(실무집행)로 변경(안 제33조제1항 본문, 제4항)
- 나. 항공안전 강화,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 중 재무능력에 대한검토기간을 확대하고, 법인의 납입 자본금 및 개인의 자산평가액을 상향하고, 항공기 대수를 상향조정(안 별표1)

103.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8. 3. 14.

• 마감일자 : 2018. 4. 24.

- 초고성능컴퓨터의 정의 및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지정·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12.19. 공포, 2018.6.20. 시행)됨에 따라 시행중인 시행규칙의 일부 조항을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초고성능컴퓨팅자원에 대한 정의 중 중복된 부분 삭제(안 제2조)
 - 법 제2조가 초고성능컴퓨터 정의를 포함하도록 개정되고, 현행 시행규칙에 첨단연구망 정의가 법과 중복되어 있어 현행 시행규칙 제2조의 중복된 내용을 개정함.
- 나.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사항 중 중복된 부분 삭제(안 제3조)
 - 시행령 제3조가 시행계획에 국가센터의 사업 계획을 포함하도록 개정될 예정이며, 같은 영 제11조가 국가센터의 사업 추진실적을 매년 제출하도록 개정될 예정이므로 이와 중복된 내용을 개정함.
- 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안 제4조)
 - 시행령 제12조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함.

104.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8. 3. 14.

• 마감일자 : 2018. 4. 24.

-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국가연구개발 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 확보 노력을 강화하며, 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조사·분석을 의무화하고,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12.19. 공포, 2018.6.20.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시

행중인 일부 조항은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 확보 강화 (안 제12조의2 신설)
 -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 확보계획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
- 나.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산업체 지원 강화 (안 제15조의2 신설)
 - 산업체의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명시함.
- 다.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시행계획 포함 사항 조정(안 제3조)
 -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시행계획 내용 중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및 전문센터의 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을 시행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 라. 국가센터 사업의 추진실적 제출(안 제11조)
 -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국가센터의 사업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명시함.
- 마. 전문센터 지정 시 고려사항 및 지정 후 공고 사항 추가(안 제12조)
 - 전문센터 지정을 위한 고려사항 추가, 전문센터 지정 후 공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바.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조사 항목 구체화 등(안 제14조)
 -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조사의 항목을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인력에 관한 사항,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및 산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하고, 국가센터가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10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3. 15.

• 마감일자 : 2018. 3. 20.

- 항공사의 이용자 편의 증진 유도를 위한 국토교통부 항공서비스 평가 결과 및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사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노력을 운수권 배분 평가에 반영하기 위함임. 또한 국가간 교류협력 촉진, 기업의 사회적 기여 및 사회적 책임이행 등 항공사의 공공성 제고 노력을 운수권 배분 평가지표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위탁사육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규모 규정(부칙 안 제2조제1항)
- 나. 위탁사육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과 기한에 대해 규정(부칙 안 제2조제2항)

106.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8. 3. 15.

• 마감일자 : 2018. 4. 25.

- 선원법 개정('17.11.28 공포, '18.5.29 시행)으로 별지 제26호서식 해사노동협약선언서상 인용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선내 불만처리절차에 포함해야 할 사항이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인용 조문 변경(별지 제26호서식)

107.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8. 3. 15.

• 마감일자 : 2018. 4. 25.

- 선원법 개정('17.11.28 공포, '18.5.29 시행)으로 신설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법률로 상향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선원법 개정으로 선내불만처리 절차를 제시하지 않거나 법을 위반하

여 제시한 경우 과태료가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2)
나. 선내 불만처리절차에 게시해야 할 사항이 법률로 상항됨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안 제49조의2 삭제)

10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 예고일자 : 2018. 3. 15. ● 마감일자 : 2018. 4. 24.
- 이용자 특성을 반영하여 피난약자들이 거주하는 시설에는 스프링클러 등 동일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산후조리원과 조산원을 노유자시설로 지정하고 소방안전관리자등이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소방시설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근린생활의 조산원과 산후조리원을 노유자시설로 지정(안 별표 2)
 - 나.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10)
 - 1) 국민의 규제저항과 실무교육 미이수 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정지(시행규칙 제40조)를 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50만원 과태료 부과
 - 2) 실무교육 미이수시 업무처리 절차

109.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3. 15. ● 마감일자 : 2018. 4. 25.
- 외국 특허청과 특허출원 및 심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유에 외국 특허청 또는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법률 제15093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 예정)됨에 따라 서류 반출 요건·절차, 서류의 종류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출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전자파일 실용신안등록증 도입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업무협약 이행을 위한 서류 반출 규정 반영(안 제17조)

- 외국 특허청 등과 업무협약 이행시 비밀·보안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류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의7을 준용하도록 규정함.

나. 전자파일 실용신안등록증 도입 반영(안 제11조, 제13조)

- 전자파일 실용신안등록증의 도입에 따라 발급(정정발급, 재발급 포함) 근거를 규정함.

110.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3. 15.

● 마감일자 : 2018. 4. 25.

- 외국 특허청과 특허출원 및 심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유에 외국 특허청 또는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법률 제15093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 예정)됨에 따라 서류 반출 요건·절차, 서류의 종류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전자파일 특허증 도입, PCT 수수료 납부 방법 개선 등 출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업무협약 이행을 위한 서류 반출 규정 신설(안 제120조의7)

- 외국 특허청 등과 업무협약 이행시 비밀·보안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류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적시함.

나. 전자파일 특허(등록)증 도입 반영(안 제50조, 제50조의3, 제51조)

- 전자파일 특허(등록)증의 도입에 따라 발급(정정발급, 재발급 포함) 근거와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다. PCT 국제출원의 수수료 납부 방법 개선(안 제104조, 제106조의5)

- PCT 국제출원의 수수료납부시 납부서 제출 없이 수수료납부통지서에 부여된 납부자번호를 이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

111.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8. 3. 15. • 마감일자 : 2018. 4. 24.
- 교육부장관이 점자로 제작, 보급하여야 하는 교과용 도서를 시각장애인 ‘학생’ 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서 시각장애인 ‘학생 및 교원’ 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로 수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점자법 (‘17. 12. 12. 개정, ’ 18. 6. 13. 시행)이 개정된바,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법 규정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교육부장관이 점자로 제작·보급해야 하는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교과서’ 에서 ‘교과서와 지도서’ 로 수정(안 제3조 개정)

1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8. 3. 15. • 마감일자 : 2018. 4. 25.
- 육군 참전 전투목록에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을 추가하여 해당 전투 참전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 및 지원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육군 참전 전투목록에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 추가(별표)
 - ’54. 5. 26 ~ 55. 3. 31. 사이에 육군이 전개한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공비소탕 작전을 육군 전투 목록 추가하여 해당 전투 참전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실시하기 위함

113.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3. 16. • 마감일자 : 2018. 4. 25.
- 공무원 직무발명 국가승계결정시 고려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국유 특허 처분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발명기관의 장이 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한 국가승계결정을 하려는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동 규정 삭제(안 제3조 삭제)
- 나. 상위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은 중앙관서의 장이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관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변경함(안 제7조 개정)
- 다. 국유특허 처분 계약 시 계약 당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아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계약을 위해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제3항 신설)

114.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3. 16.
- 마감일자 : 2018. 4. 25.

- 공무원 직무발명의 경우 민간과 달리 국가 승계의사 통지기한이 정해지지 않아서 기한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하지 않고 제3자에게 불법으로 유출시키더라도 이를 파악하거나 제재할 수단이 없어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함. 아울러 국유특허 활용률 제고를 위해 전문성 있는 기관에 전용실시권 허락 업무 등을 위탁하고, 국유특허권의 심판·소송사무 수행주체를 명확히 하며, 세입이 발생하지 않는 무상실시 특허에 대해서는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가. 국유특허권의 심판·소송사무를 특허청장이 관장하도록 명시함(안 제3조)
- 나. 직무발명의 국가승계 여부를 4개월 내에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6조)

- 다. 직무발명의 불승계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제3자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못하게 하고, 직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발명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제3자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때 발명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8조)
- 라. 국유특허권을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 처분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공무원이 신고 의무, 비밀유지의무,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신의성실하게 협력할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등록 보상금, 처분보상금 및 기관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7조 및 제20조)
- 마. 업무의 위탁 범위에 전용실시권의 허락 및 국유특허권 처분에 따른 관리업무를 추가하고 수탁 기관이 위탁업무에 대한 집행실적 등을 특허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24조)

11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3. 16.
- 마감일자 : 2018. 4. 25.
- 중증 폐질환 환자의 생명유지 및 폐 이식대기자의 대기기간 단축을 위하여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에 폐를 추가하고, 신장 이식대기자 중 소아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성에 따라 소아의 연령 기준과 이식대기자 선정기준을 조정하며, 이식대상자 선정 결과의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다장기 우선원칙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에 폐 추가(안 제14조).
 - 나. 소아의 연령 기준 변경, 소아의 신장 이식대기자 선정 기준 조정 및 개별 장기 이식대상자 선정 후 다장기 우선원칙 적용 배제(안 별표5).

11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8. 3. 16.

• 마감일자 : 2018. 4. 25.

- 박물관·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취득·변경·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자료 보존과 관리를 위해 적정한 수장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상 공립박물관만 받도록 되어 있는 설립타당성 평가 대상을 공립미술관까지 확대하며, 박물관 및 미술관의 폐관 시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062호, 2017.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의3 개정 및 별지 제5호의4서식 개정)
- 나. 박물관·미술관의 자료 목록 및 기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의2 신설,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의3서식 신설)
- 다. 박물관·미술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의3 신설)
- 라. 등록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폐관 신고 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하도록 함(안 제9조 및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별지 제15호 서식 신설)

11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8. 3. 16.

• 마감일자 : 2018. 4. 25.

- 현행법상 공립박물관만 받도록 되어 있는 설립타당성 평가 대상을 공립미술관까지 확대하며, 박물관 및 미술관의 폐관 시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062호, 2017.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 7조의2 개정)
- 나. 등록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폐관 신고 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하도록 함(안 제17조 개정)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3. 16.
- 마감일자 : 2018. 3. 26.

-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의 공제 기간 및 공제금액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 및 감면기간을 확대하며,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저임금 근로 청년의 소득 확충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현행 3년간 75퍼센트, 그 이후 2년간 50퍼센트에서 5년간 10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세액감면을 신규로 적용하는 한편, 대상 업종에 통신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을 추가하고 생계형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 후 최초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는 창업한 지역과 관계없이 100퍼센트의 감면율을 적용함.
- 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그 외 일반기업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청년친화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공제금액을 각각 500만원씩 상향 조정함.
- 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하여는 현행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세의 70퍼센트를 감면하던 것을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세의 100퍼센트를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함.
- 라. 연구개발특구 등 지역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세액감면한도 적용시 상시근로자 고용 1인당 감면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청년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1인 당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부분 복귀시 세액감면 대상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함.

바. 단독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한 연령요건(현행 30세 이상)을 폐지함.

119.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3. 16.
- 마감일자 : 2018. 4. 25.

○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등 공공목적 긴급 상황에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공공목적 긴급 상황이 산림 등의 분야로 한정되어 있고 비행금지구역, 관제권에서 비행하는 경우 사전승인이 필요해 적기 드론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법 제127조제2항 및 제1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비행승인이 필요한 때에 국가기관등이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 그 사실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유선통보 후 비행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308조)
- 나. 대형사고로 인한 교통장애 복구, 시설물 붕괴·전도로 인한 재난 발생 시 긴급점검 등 국가기관등이 적용특례를 받는 공공목적 긴급 상황 구체화(안 제313조의2)
- 다. 무인비행장치의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 하되 필요시 90일로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312조의2, 별지 123호의2)

120.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3. 16.
- 마감일자 : 2018. 4. 25.
-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등 공공목적 긴급 상황에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공공분야 무인비행장치 활용 확산으로 긴급 운영이 필요한 공공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등 19개 기관을 법 제131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에 추가(안 제3조)

121.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8. 3. 16.
- 마감일자 : 2018. 4. 25.
- 학교는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를 국·공·사립의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설치·운영하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이 위임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대학평의원회가 자료 제출 요구 시 학교장은 자료 제출(안 제9조의2 신설)
 - 1) 대학평의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대학평의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2) 대학평의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누락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나. 대학평의원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 및 비공개 대상 명시(안 제9조

의3 신설)

- 1) 대학평의원회의 회의록을 1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함
 - 2)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 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의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명시
 - 3) 회의록을 비공개하는 경우 비공개사유 및 비공개기간을 공시하고, 비공개사유 해소 또는 비공개 기간 종료 시 즉시 공개하도록 함
- 다.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행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및 학칙으로 정함(안 제9조의4 신설)